



제1694호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 | | | |
|---------------------|------------|--|----------------|
| ○ 공 | 고 제 1383 호 | 「남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공 영 개 발 과 2 |
| ○ 공 | 고 제 1385 호 |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생 활 경 제 과 19 |
| ○ 공 | 고 제 1386 호 | 손실보상 협의(2차측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생 활 경 제 과 38 |
| ○ 공 | 고 제 1387 호 |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기 업 지 원 과 43 |
| ○ 공 | 고 제 1388 호 | 무단방치차량(해산간주법인)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자 동 차 관 리 과 48 |
| ○ 공 | 고 제 1394 호 |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수정) | 기 업 지 원 과 50 |
| ○ 공 | 고 제 1397 호 | 「수산3지구」 지적제조사 사업완료 공고 | 토 지 정 보 과 55 |
| ○ 공 | 고 제 1398 호 |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시송달 공고 | 도 시 재 생 과 82 |
| ○ 공 | 고 제 1407 호 |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재 무 과 86 |
| ○ 공 | 고 제 1408 호 |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재 무 과 111 |
| ○ 공 | 고 제 1423 호 |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재 무 과 124 |
| ○ 공 | 고 제 1424 호 |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재 무 과 137 |
| ○ 보 건 소 공 고 제 7 6 호 |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 식 품 위 생 과 150 |

고 시

- | | | | |
|-----|-----------|--|---------------|
| ○ 고 | 시 제 7 1 호 |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 토 지 정 보 과 151 |
| ○ 고 | 시 제 7 2 호 | 지적제조사사업 완료지구(수산3지구) 지형도면 고시 | 토 지 정 보 과 155 |
| ○ 고 | 시 제 7 3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1-10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 도 시 재 생 과 158 |
| ○ 고 | 시 제 7 4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62호선, 소로2-2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 도 시 재 생 과 166 |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383호

「남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21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2022. 3. 1. 시행)으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방식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부과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7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과오납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공영개발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8502, FAX 453-568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남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2022. 3. 1. 시행)으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방식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부과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7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과오납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남동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사용료의 부과대상)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3조(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1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 1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 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 1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 1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도 점용·사용계획 및 점용료·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사용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별표 2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해당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2.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점용·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사용료를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그 이후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점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점용료·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④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점용·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사용료의 조정산식) 구청장은 동일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용료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가산금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점용료·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내야 할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점용료·사용료와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점용료·사용료와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점용료·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과오납된 점용료·사용료의 정산) ① 구청장은 점용료·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1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도 본 조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
용료·사용료”는 “가산금”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3조 관련)

구 분	산정방식 (단위 : 연간)
1.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형태로 만든 구조물·호 안(기슭)둑 침식 방지시설·소형 선 부두(야적장을 포함한다)·방 파제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 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하 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 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 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 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 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조선용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또는 선박의 수리만 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 (艀裝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	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3.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사용	가. 전기사업용수 - m³/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 원 -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m³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 ※ 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 $\frac{\text{관의 지름}^2 \times \text{관내유속(m/sec)}}{146^2 \times 60}$

구 분	산정방식 (단위 : 연간)
4.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	가.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인천광역시시장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전년도 10월 중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가격(조사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수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한 가격을 말한다)으로서 채취된 골재가 인근의 특별자치시·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군·구에서 판매된 도매가격 평균치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곱한 값 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다.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에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
5.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	가. 인접한 토지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6.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	가. 인접한 토지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

구 분	산정방식 (단위 : 연간)
	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
7.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사용	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 적용한다.
8. 준설토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사용(「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m ³)당 100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	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	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 비 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시·군·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시·군·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인천광역시시장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인천광역시시장의 해당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m²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m²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별표 2]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기준표(제4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	100%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제5호 및 제15조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라.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의 공익단체(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50%
2.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0%
3.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오탁(汚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0%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0%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0%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따르는 흙·돌의 채취 및 준설 등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0%
7.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

8.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0%
9.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제7호부터 제10호까지·제15호·제18호에 따른 물질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0%
1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50%
1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50%
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0%
1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점용료·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업종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3)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50%

[별표 3]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조정산식(제6조 관련)

점용료·사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사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25/100+(증가율-500/100)×5/1,000}]

[별지 제1호서식]

점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부분)

제호	년도 세입	납
장		
관		
항		
목		
주관		취급
일금		
위 년 월 일까지 _____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점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

제호	년도 세입	납
장		
관		
항		
목		
주관		취급
일금		
위 년 월 일까지 _____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서

제호	년도 세입	
장		
관		
항		
목		
일금		
위와 같이 영수하였으므로 통		
년	월	일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세입징수관 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세입징수관 인

남동구청장
세입징수관

[참고자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385호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소래포구 어시장의 전통시장 등록에 따라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운영위원회’ 운영 사항을 정하여 어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개정
: 소래포구 어시장 전통시장 인정에 따른 제명 개정
- 안 제5조부터 제8조(운영위원회)
: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생활경제과)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7층 생활경제과
☎ 453-5933, FAX 453-2669

4. 개정조례(안) : 별첨. 끝.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7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소래포구 어시장의 전통시장 인정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른 시행 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 조례 제4조의2(운영위원회) 제3항에 따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어시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4조의2(운영위원회)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 안 제5조~제8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운영위원회)
-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 협약서 제20조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어시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2조제2호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영업형태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어시장 공용부분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2. 상거래 질서유지 및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한 사용자 주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용자 의견 취합 및 협의에 관한 사항
4. 시설개선을 포함한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시장의 관리·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각 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 사항에 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하 “어시장”이라 한다) 업무 담당 국장과 사용자 대표가 된다.

②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어시장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어시장 관리·운영 관계 부서의 장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2. 사용자 중 어시장 활성화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사용자 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남동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4. 어시장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시장 담당 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공동위원장이 각자 또는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중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유재산 사용 · 수익허가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 화 번 호				
⑤신청내용							
재 산 의 표 시			신청면적 (㎡)	대부기간	용 도 (사 용 목 적)	사용·수익 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수익허가서

재산의 표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68

소래포구 어시장 건물 층 _m²

신청인 주소 :

성명 :

20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 무상 사용허
가 신청에 대하여 별지의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20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 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남동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 기
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
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와 관련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
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의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잔여 미
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남동
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
하고 그 증서를 남동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남동구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
제금을 남동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등)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된 일체의 부과금 및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그 밖에 남동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남동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변경, 해지 요청)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변경 또는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또는 해지 예정일부터 2개월 전까지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남동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남동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남동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남동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남동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남동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협의) 쌍방 간의 협의로 본 허가조건 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남동구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사용·수익허가 변경 및 해지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자 택	
		점 포	
		휴대폰	
	주 소		
사용·수익 허가내역	시설번호(상호)		
	면적(m ²)		
	연사용료(원)		
변경사항	변경 전	(주소, 사용자)	
	변경 후	(주소, 사용자)	
휴업또는폐업 (해당사항 ○ 표시)	기 간		
	사 유		
해지사유	영업부진(), 건강(), 전업(), 기 타()		

상기 신청인은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사용·수익허가 변경 및 해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변경 또는 해지)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 증빙서류 각 1부

남동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u>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u> <u>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u>」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수익허가 신청) ① <u>조례</u>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사용 · 수익허가 대상자 모집기간 중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u>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u> <u>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u> 제1조(목적) ----- 「<u>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u>」----- -----. 제2조(사용 · 수익허가 신청) ① 「<u>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u>」(이하 “<u>조례</u>”라 한다)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u>어시장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u> 2. <u>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에 관</u>

<신 설>

한 사항

3. 조례 제2조제2호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영업형태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
한다.

1. 어시장 공용부분의 관리방법
에 관한 사항

2. 상거래 질서유지 및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한 사용자 주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
용자 의견 취합 및 협의에 관
한 사항

4. 시설개선을 포함한 환경개선
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시장의 관리·운
영 및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각 항의 심의·조
정 및 자문 사항에 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운영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
다)은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

하 “어시장”이라 한다) 업무 담당 국장과 사용자 대표가 된다.

②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어시장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어시장 관리·운영 관계 부서의 장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2. 사용자 중 어시장 활성화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사용자 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남동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4. 어시장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시장 담당 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

<신 설>

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
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공동위원장이 각자 또는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중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
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참고자료]

□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조(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어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어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남동구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및 사용자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 협약서

제20조(어시장 운영 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어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래포구 어시장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 조합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조합 임원
2. 조합원 중 어시장 활성화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합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구의원
4. 관계공무원
5. 해당 분야 전문가
6. 편의시설 관리·운영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어시장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할 수 있다.

1. 심의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 나. 제2조제4항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영업형태 또는 업종 변경
2. 자문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어시장 관리운영
 - 나. 공용부분의 관리방법

- 다. 상거래 질서 유지 및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한 사용자 주의·지도
- 라. 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용자 의견 취합 및 협의
- 마. 시설개선을 포함한 환경개선
- 바. 사용수익허가 해지 또는 취소, 철회 점포의 용도변경
- 사. 그 밖에 어시장 발전을 위하여 구청 또는 조합이 요청하는 사항 등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386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손실보상협의(2차촉구) 불능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안내를 하였으나, 송달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 협의 통지가 불가능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1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 가. 사 업 명 :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7-116번지 일원
- 다. 사 업 규 모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A=2,306㎡, 지하1층/지상2층3단)
- 라.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고시일(2022.2.17.) ~ 2023.12.31.
- 마. 사업 시행자 : 남동구청장

2. 공고기간 : 2022. 7. 21.(목) ~ 2022. 8. 5.(금) (15일간)

3. 보상협의 내용 및 방법

- 가. 협의기간: 2022. 7. 15.(금) ~ 2022. 8. 5.(금)
- ※ 공시송달 공고기간 반영으로 협의기간 변경(연장)

[당초 협의(2차촉구) 기간 : 2022. 7. 15.(금) ~ 2022. 7. 29.(금)]

나. 협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경제과(☎ 032 - 453 - 2662)

다. 보상절차 및 방법 :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현금보상(계좌이체)

라.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불임(손실보상협의 안내문) 참조

4. 보상협의 대상

소재지	지 번	지목	호수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전유부	대지권	성명	주소	
남동구 간석동	224-3	대	2**호	36.13	22.90/187	임*규	인천 남동구 간석로72번길 3*~1 2**호(간석동)	보상금액은 별도 안내

5. 기 타

가. 공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유자 등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생활경제과(☎032-453-2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협의(2차촉구) 안내문

1. 사 업 명 :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 협의기간 : 2022.07.15.(금) ~ 2022.08.05.(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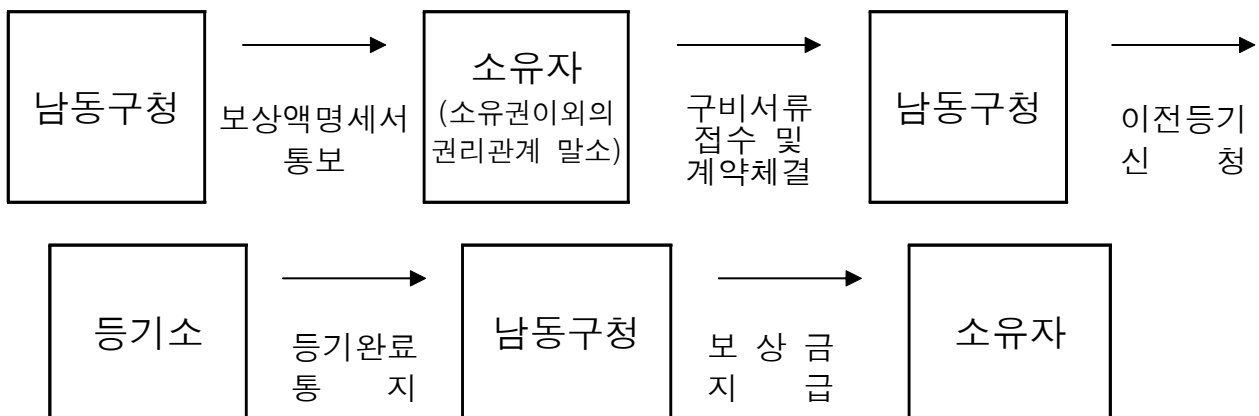
※ 공시송달 공고기간 반영으로 협의기간 변경(연장)

[당초 협의(2차촉구) 기간 : 2022. 7. 15.(금) ~ 2022. 7. 29.(금)]

※ 장시간 대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 전일 유선연락 후 방문

3. 계약장소 : 남동구청 생활경제과

4. 보상금 지급절차



○ 토지 보상 : 전액 현금보상(은행계좌로 입금)

○ 지장물 보상 : 전액 현금보상(은행계좌로 입금)

○ 불복 절차 : (협의 미 성립 시) 재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및 불복 시 행정소송 가능

5. 계약방법

○ 보상내역은 첨부된 개인별 손실보상액 명세서 참조

- 보상계약체결 : 보상금을 수령할 본인(공부상의 소유자 등)이 직접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및 관련서류 등을 준비하여 계약체결

- ※ 간접보상비(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에 해당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사업인정 고시일[2022.2.17(남동구 고시 제2022-11호)]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거주한 소유자 및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

- 협의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 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부동산 매도용, 매수인 남동구청장 139-83-00072)
 나. 주민등록 등·초본 각 1통(동거인 및 전입일자 표시, 주소 변동사항 모두 포함)
 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 등)
 라. 등기권리증 원본, 은행통장(사본)
 마. 대리인 위임 시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도장, 본인
 리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및 여권) 등 지참
 바. 간접보상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등본 및 각 세대원 초본)

- 보상계약의 위임

: 대리인에게 보상계약을 위임할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
 가

첨부된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도장,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혹은 운전면
 허증

또는 여권) 등을 지참

6. 토지 및 물건 계약 전 이행사항

- 등기의 변경 및 권리관계 말소 등

- 상속등기 미필자는 상속등기 완료 후 신청해야 함.
- 소유권이외의 권리관계 말소 : 등기 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등기, 예고등

기,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지상권, 압류 등)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 완료하여 등기부등본 상 말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협의계약 체결이 가능함.

－ 변경 및 권리관계 말소 등기 관련 비용은 소유자 부담임.

○ 목적 지장물 등에 설정되었던 임대차관계 종결에 대한 협의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387호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21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1. 폐지이유**

- 남동구 공동브랜드 사업에 대한 기업의 신청 저조
- 공동브랜드 상표에 대한 실효성 부족

2. 주요내용

-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기업지원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7층 기업지원과
- ☎ 453-2695, FAX 453-5169)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공동브랜드 선정업체의 사용기간 만료(2021. 9. 30.), 상표의 대외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신청 저조 및 실효성 부족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지원세부내역

년 도	예 산	집행액	지원내역	비 고
총 계	100,000	45,000	총 32개사	총 예산 중 45% 집행
2019	20,000	8,000	4개사*2,000천원	
2018	20,000	18,000	9개사*2,000천원	*신청저조로 인하여 업체당 보조금 증액(1백→2백)
2017	30,000	11,000	11개사*1,000천원	
2016	30,000	8,000	8개사*1,000천원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388호

무단방치차량(해산간주법인)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등기)송달하여야 하나, 해산간주법인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1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해산간주법인)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2022.7.21.~2022.8.5.(15일)

3. 대 상 차 량: 83다3106

4. 공 고 내 용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내 자진처리 및 이동을 하시기 바라며, 불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26법,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견인 후 강제처리(폐차,매각) 될 수 있습니다.

나. 강제견인 예고를 송달받지 못한 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해산간주법인)차량 내역서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남동구)	수취인명	주 소	견인일
1	2021-00147	83다3106	포터Ⅱ슈퍼캡하이내장탑차 (PORTERⅡ)	남동구 남동대로 733번길 12 성화그린 201동 주차장	진선기업(주) (해산간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8길 16-12, (서초지점)(양재동)	2021.4.3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394호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21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1. 폐지이유**

- 남동구 공동브랜드 사업에 대한 기업의 신청 저조
- 공동브랜드 상표에 대한 실효성 부족

2. 주요내용

-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기업지원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7층 기업지원과
- ☎ 453-2695, FAX 453-5169)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공동브랜드 선정업체의 사용기간 만료(2021. 9. 30.), 상표의 대외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신청 저조 및 실효성 부족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지원세부내역

년 도	예 산	집행액	지원내역	비 고
총 계	100,000	45,000	총 32개사	총 예산 중 45% 집행
2019	20,000	8,000	4개사*2,000천원	
2018	20,000	18,000	9개사*2,000천원	*신청저조로 인하여 업체당 보조금 증액(1백→2백)
2017	30,000	11,000	11개사*1,000천원	
2016	30,000	8,000	8개사*1,000천원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397호

수산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남동구 지적재조사사업 수산3지구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5일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사업 수산3지구
2. 사업지구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319-4번지 일원
3. 사업완료 필지 수 및 면적 : 240필지, 98,114.4㎡
4. 경계확정 필지 수 및 면적 : 238필지, 95,379.8㎡
5. 경계미확정 필지 수 및 면적 : 2필지/ 2,734.6㎡(미확정 필지 건 붙임 참조)
4. 지적확정 조서 : 붙임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공람장소 : 남동구 토지정보과
7. 공람 비치서류
 -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8. 문의처 : 남동구 토지정보과 ☎032-453-6154)

- 붙임 1. 지적확정예정조서(전체) 1부.
2. 지적확정조서 1부.
3. 미확정 필지 조서 1부. 끝.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지적확정예정조서

번호	종전 토지					확정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증가(㎡)	감소(㎡)	성명	주소	
1	-	수산동	319-4	도로	180.0	-	수산동	319-4	도로	180.0	0.0	0.0	인천광역시남동구		
2	-	수산동	323	대	988.0	-	수산동	323	대	988.0	0.0	0.0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	
3	-	수산동	323-4	도로	9.0	-	수산동	323-4	도로	9.0	0.0	0.0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	
4	-	수산동	323-5	도로	9.0	-	수산동	323-5	도로	9.0	0.0	0.0	인천광역시남동구		
5	-	수산동	323-7	도로	21.0	-	수산동	323-7	도로	21.0	0.0	0.0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	
6	-	수산동	334-1	종교용지	872.0	-	수산동	334-1	종교용지	872.0	0.0	0.0	재**인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7	-	수산동	334-3	전	404.0	-	수산동	334-3	전	404.0	0.0	0.0	재**인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8	-	수산동	334-4	도로	60.0	-	수산동	334-4	도로	60.0	0.0	0.0	재**인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9	-	수산동	335	대	524.0	-	수산동	335	대	524.0	0.0	0.0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10	-	수산동	335-1	도로	18.0	-	수산동	335-1	도로	18.0	0.0	0.0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11	-	수산동	336	대	793.0	-	수산동	336	대	793.0	0.0	0.0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12	-	수산동	336-1	대	325.0	-	수산동	336-1	대	325.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13	-	수산동	336-2	대	13.0	-	수산동	336-2	대	13.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14	-	수산동	336-3	대	59.0	-	수산동	336-3	대	59.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15	-	수산동	337	전	195.0	-	수산동	337	전	195.0	0.0	0.0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16	-	수산동	338-2	종교용 지	350.0	-	수산동	338-2	종교용 지	365.4	15.4	0.0	재**인기독 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17	-	수산동	338-3	대	284.0	-	수산동	338-3	대	284.0	0.0	0.0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18	-	수산동	338-4	전	374.0	-	수산동	338-4	전	374.0	0.0	0.0	재**인기독 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19	-	수산동	338-5	전	407.0	-	수산동	338-5	전	407.0	0.0	0.0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20	-	수산동	338-6	도로	81.0	-	수산동	338-6	도로	81.0	0.0	0.0	재**인기독 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21	-	수산동	338-7	종교용 지	65.0	-	수산동	338-7	종교용 지	57.0	0.0	8.0	재**인기독 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22	-	수산동	338-8	도로	59.0	-	수산동	338-8	도로	59.0	0.0	0.0	재**인기독 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23	-	수산동	338-9	전	64.0	-	수산동	338-9	전	57.0	0.0	7.0	재**인기독 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24	-	수산동	338-12	도로	1,048.0	-	수산동	338-12	도로	1,042.9	0.0	5.1	인천광역시남 동구		
25	-	수산동	339	대	190.0	-	수산동	339	대	190.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	
26	-	수산동	339-1	전	60.0	-	수산동	339-1	전	60.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	
27	-	수산동	339-2	도로	18.0	-	수산동	339-2	도로	18.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	
28	-	수산동	340	대	196.0	-	수산동	340	대	196.0	0.0	0.0	조**(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29	-	수산동	340-1	도로	17.0	-	수산동	340-1	도로	17.0	0.0	0.0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 ***	
30	-	수산동	340-2	대	138.0	-	수산동	340-2	대	138.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	
31	-	수산동	340-3	전	196.0	-	수산동	340-3	전	186.4	0.0	9.6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	
32	-	수산동	340-4	전	68.0	-	수산동	340-4	전	68.0	0.0	0.0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 ***	
33	-	수산동	501-1	도로	225.0	-	수산동	501-1	도로	225.0	0.0	0.0	인천광역시남 동구		

34	-	수산동	502-1	도로	10.0	-	수산동	502-1	도로	10.0	0.0	0.0	인천광역시남동구		
35	-	수산동	504	전	298.0	-	수산동	504	전	298.0	0.0	0.0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	
36	-	수산동	505	대	889.0	-	수산동	505	대	880.6	0.0	8.4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37	-	수산동	505-1	전	50.0	-	수산동	505-1	전	50.0	0.0	0.0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38	-	수산동	510	전	119.0	-	수산동	510	전	128.6	9.6	0.0	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골로 ***	
39	-	수산동	511-1	전	760.0	-	수산동	511-1	전	760.0	0.0	0.0	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골로 ***	
40	-	수산동	511-2	대	1,175.0	-	수산동	511-2	대	1,175.0	0.0	0.0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41	-	수산동	511-4	대	33.0	-	수산동	511-4	대	33.0	0.0	0.0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42	-	수산동	511-6	대	15.0	-	수산동	511-6	대	15.0	0.0	0.0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43	-	수산동	512-1	대	868.0	-	수산동	512-1	대	868.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코중앙 ***	
44	-	수산동	512-2	대	594.0	-	수산동	512-2	대	570.1	0.0	23.9	이**(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45	-	수산동	512-3	대	178.0	-	수산동	512-3	대	178.0	0.0	0.0	이**(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46	-	수산동	512-4	전	10.0	-	수산동	512-4	전	10.0	0.0	0.0	이**(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47	-	수산동	512-6	도로	138.0	-	수산동	512-6	도로	138.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코중앙 ***	
48	-	수산동	512-8	도로	58.0	-	수산동	512-8	도로	58.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코중앙 ***	
49	-	수산동	512-10	도로	44.0	-	수산동	512-10	도로	44.0	0.0	0.0	이**(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50	-	수산동	512-11	도로	67.0	-	수산동	512-11	도로	67.0	0.0	0.0	이**(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51	-	수산동	512-12	도로	351.0	-	수산동	512-12	도로	351.0	0.0	0.0	인천광역시남동구		
52	-	수산동	513	대	318.0	-	수산동	513	대	318.0	0.0	0.0	이**(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53	-	수산동	514-1	대	433.0	-	수산동	514-1	대	433.0	0.0	0.0	손**사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	
54	-	수산동	514-3	도로	67.0	-	수산동	514-3	도로	67.0	0.0	0.0	인천광역시남동구		

제1694호

남동구 구보

2022. 7 28. 금요일

55	-	수산동	515	대	329.0	-	수산동	515	대	329.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56	-	수산동	516	전	843.0	-	수산동	516	전	836.4	0.0	6.6	손**사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	
57	-	수산동	517-1	대	327.0	-	수산동	517-1	대	327.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58	-	수산동	517-2	전	129.0	-	수산동	517-2	전	129.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59	-	수산동	518-1	전	1,424.0	-	수산동	518-1	전	1,424.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60	-	수산동	518-2	대	316.0	-	수산동	518-2	대	316.0	0.0	0.0	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61	-	수산동	518-4	도로	110.0	-	수산동	518-4	도로	110.0	0.0	0.0	인천광역시남 동구		
62	-	수산동	519-1	대	306.0	-	수산동	519-1	대	306.0	0.0	0.0	황**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	
63	-	수산동	519-2	전	860.0	-	수산동	519-2	전	860.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64	-	수산동	520	전	50.0	-	수산동	520	전	50.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65	-	수산동	521	전	904.0	-	수산동	521	전	904.0	0.0	0.0	정**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	
66	-	수산동	521-1	도로	58.0	-	수산동	521-1	도로	58.0	0.0	0.0	인천광역시남 동구		
67	-	수산동	522	대	158.0	-	수산동	522	대	158.0	0.0	0.0	김**(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68	-	수산동	522-1	대	708.0	-	수산동	522-1	대	708.0	0.0	0.0	정**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	
69	-	수산동	523	대	699.0	-	수산동	523	대	677.1	0.0	21.9	김**(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70	-	수산동	523-1	대	100.0	-	수산동	523-1	대	100.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71	-	수산동	523-2	대	33.0	-	수산동	523-2	대	33.0	0.0	0.0	김**(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72	-	수산동	523-3	대	14.0	-	수산동	523-3	대	14.0	0.0	0.0	김**(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73	-	수산동	524	대	1,144.0	-	수산동	524	대	1,128.7	0.0	15.3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74	-	수산동	525-2	종교용 지	988.0	-	수산동	525-2	종교용 지	988.0	0.0	0.0	김**(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75	-	수산동	525-3	대	261.0	-	수산동	525-3	대	300.2	39.2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제1694호

남동구 구보

2022. 7 28. 금요일

76	-	수산동	525-8	도로	161.0	-	수산동	525-8	도로	161.0	0.0	0.0	인천광역시 남동구		
77	-	수산동	529-1	종교용지	330.0	-	수산동	529-1	종교용지	336.0	6.0	0.0	대**수교장로회경성교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78	-	수산동	529-2	전	468.0	-	수산동	529-2	전	468.0	0.0	0.0	임**(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79	-	수산동	529-3	대	499.0	-	수산동	529-3	대	499.0	0.0	0.0	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80	-	수산동	529-4	대	196.0	-	수산동	529-4	대	167.6	0.0	28.4	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81	-	수산동	529-5	전	1,047.0	-	수산동	529-5	전	1,047.0	0.0	0.0	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82	-	수산동	529-7	도로	23.0	-	수산동	529-7	도로	23.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83	-	수산동	529-8	대	659.0	-	수산동	529-8	대	617.0	0.0	42.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84	-	수산동	529-9	도로	9.0	-	수산동	529-9	도로	9.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85	-	수산동	529-10	도로	1,788.0	-	수산동	529-10	도로	1,785.4	0.0	2.6	인천광역시 남동구		
86	-	수산동	529-14	전	28.0	-	수산동	529-14	전	28.0	0.0	0.0	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87	-	수산동	535	전	663.0	-	수산동	535	전	663.0	0.0	0.0	유**영농조합법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	
88	-	수산동	535-1	전	990.0	-	수산동	535-1	전	990.0	0.0	0.0	유**영농조합법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	
89	-	수산동	536	대	1,068.0	-	수산동	536	대	1,068.0	0.0	0.0	최**(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90	-	수산동	536-8	전	1.0	-	수산동	536-8	전	1.0	0.0	0.0	인천광역시 남동구		
91	-	수산동	537	전	1,117.0	-	수산동	537	전	1,117.0	0.0	0.0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92	-	수산동	537-2	전	427.0	-	수산동	537-2	전	427.0	0.0	0.0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93	-	수산동	537-3	전	439.0	-	수산동	537-3	전	439.0	0.0	0.0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94	-	수산동	538-1	대	320.0	-	수산동	538-1	대	301.7	0.0	18.3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 ***	
95	-	수산동	538-2	대	491.0	-	수산동	538-2	대	491.0	0.0	0.0	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	
96	-	수산동	538-3	잡종지	300.0	-	수산동	538-3	잡종지	300.0	0.0	0.0	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제1694호

남동구 구보

2022. 7 28. 금요일

97	-	수산동	538-4	대	70.0	-	수산동	538-4	대	70.0	0.0	0.0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 ***	
98	-	수산동	538-6	전	228.0	-	수산동	538-6	전	228.0	0.0	0.0	한**(외 2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99	-	수산동	538-7	대	397.0	-	수산동	538-7	대	398.0	1.0	0.0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00	-	수산동	538-8	대	681.0	-	수산동	538-8	대	681.0	0.0	0.0	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01	-	수산동	538-9	전	337.0	-	수산동	538-9	전	359.9	22.9	0.0	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	
102	-	수산동	538-10	도로	28.0	-	수산동	538-10	도로	28.0	0.0	0.0	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	
103	-	수산동	538-12	전	1,141.0	-	수산동	538-12	전	1,141.0	0.0	0.0	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	
104	-	수산동	538-15	대	4.0	-	수산동	538-15	대	4.0	0.0	0.0	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05	-	수산동	538-16	대	3.0	-	수산동	538-16	대	3.0	0.0	0.0	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06	-	수산동	538-20	대	8.0	-	수산동	538-20	대	8.0	0.0	0.0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 ***	
107	-	수산동	538-22	대	12.0	-	수산동	538-22	대	7.4	0.0	4.6	인천광역시남 동구		
108	-	수산동	538-23	대	6.0	-	수산동	538-23	대	6.0	0.0	0.0	인천광역시남 동구		
109	-	수산동	538-28	전	78.0	-	수산동	538-28	전	97.5	19.5	0.0	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	
110	-	수산동	539	전	50.0	-	수산동	539	전	50.0	0.0	0.0	서**		
111	-	수산동	540-2	전	234.0	-	수산동	540-2	전	234.0	0.0	0.0	한**(외 2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112	-	수산동	540-3	전	132.0	-	수산동	540-3	전	132.0	0.0	0.0	한**(외 2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113	-	수산동	540-5	전	1.0	-	수산동	540-5	전	1.0	0.0	0.0	인천광역시남 동구		
114	-	수산동	541-1	대	554.0	-	수산동	541-1	대	554.0	0.0	0.0	한**(외 2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115	-	수산동	541-3	전	280.0	-	수산동	541-3	전	280.0	0.0	0.0	한**(외 2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116	-	수산동	541-4	도로	26.0	-	수산동	541-4	도로	26.0	0.0	0.0	한**(외 2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117	-	수산동	542	전	2,684.0	-	수산동	542	전	2,684.0	0.0	0.0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제1694호

남동구 구보

2022. 7 28. 금요일

118	-	수산동	543	전	483.0	-	수산동	543	전	483.0	0.0	0.0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 ***	
119	-	수산동	544-1	대	661.0	-	수산동	544-1	대	661.0	0.0	0.0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20	-	수산동	544-2	전	1,349.0	-	수산동	544-2	전	1,349.0	0.0	0.0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21	-	수산동	544-3	도로	30.0	-	수산동	544-3	도로	30.0	0.0	0.0	인천광역시남동구		
122	-	수산동	544-4	전	330.0	-	수산동	544-4	전	330.0	0.0	0.0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123	-	수산동	545	대	188.0	-	수산동	545	대	188.0	0.0	0.0	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	
124	-	수산동	546	전	615.0	-	수산동	546	전	620.3	5.3	0.0	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	
125	-	수산동	547-1	전	354.0	-	수산동	547-1	전	359.1	5.1	0.0	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	
126	-	수산동	547-2	대	350.0	-	수산동	547-2	대	350.0	0.0	0.0	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	
127	-	수산동	547-3	전	23.0	-	수산동	547-3	전	23.0	0.0	0.0	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	
128	-	수산동	548	종교용지	1,132.0	-	수산동	548	종교용지	1,120.5	0.0	11.5	새**교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29	-	수산동	548-1	임야	161.0	-	수산동	548-1	임야	161.0	0.0	0.0	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	
130	-	수산동	548-3	임야	208.0	-	수산동	548-3	임야	208.0	0.0	0.0	새**교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31	-	수산동	549-1	전	15.0	-	수산동	549-1	전	15.0	0.0	0.0	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	
132	-	수산동	549-2	전	90.0	-	수산동	549-2	전	90.0	0.0	0.0	새**교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33	-	수산동	549-3	도로	82.0	-	수산동	549-3	도로	82.0	0.0	0.0	인천광역시남동구		
134	-	수산동	549-4	도로	14.0	-	수산동	549-4	도로	11.2	0.0	2.8	인천광역시남동구		
135	-	수산동	551-3	도로	167.0	-	수산동	551-3	도로	167.0	0.0	0.0	인천광역시남동구		
136	-	수산동	553	전	297.0	-	수산동	553	전	297.0	0.0	0.0	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37	-	수산동	553-2	대	248.0	-	수산동	553-2	대	248.0	0.0	0.0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38	-	수산동	553-3	대	80.0	-	수산동	553-3	대	80.0	0.0	0.0	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제1694호

남동구 구보

2022. 7 28. 금요일

139	-	수산동	553-4	대	202.0	-	수산동	553-4	대	218.6	16.6	0.0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수골로 ***	
140	-	수산동	553-9	전	666.0	-	수산동	553-9	전	666.0	0.0	0.0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41	-	수산동	553-10	대	6.0	-	수산동	553-10	대	6.0	0.0	0.0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42	-	수산동	553-11	대	33.0	-	수산동	553-11	대	33.0	0.0	0.0	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43	-	수산동	553-12	전	224.0	-	수산동	553-12	전	224.0	0.0	0.0	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44	-	수산동	555-1	대	612.0	-	수산동	555-1	대	612.0	0.0	0.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45	-	수산동	555-2	전	235.0	-	수산동	555-2	전	235.0	0.0	0.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46	-	수산동	556-1	대	53.0	-	수산동	556-1	대	57.5	4.5	0.0	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골로 ***	
147	-	수산동	566	전	426.0	-	수산동	566	전	426.0	0.0	0.0	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	
148	-	수산동	567	답	5,448.0	-	수산동	567	답	5,448.0	0.0	0.0	임**(외 1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	
149	-	수산동	568	전	407.0	-	수산동	568	전	407.0	0.0	0.0	임**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	
150	-	수산동	569	전	2,215.0	-	수산동	569	전	2,215.0	0.0	0.0	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님이길 ***	
151	-	수산동	570	전	1,101.0	-	수산동	570	전	1,101.0	0.0	0.0	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행정로 ***	
152	-	수산동	571-1	전	864.0	-	수산동	571-1	전	871.7	7.7	0.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	
153	-	수산동	571-2	대	30.0	-	수산동	571-2	대	30.0	0.0	0.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	
154	-	수산동	571-4	전	1,060.0	-	수산동	571-4	전	1,060.0	0.0	0.0	윤**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 ***	
155	-	수산동	572-1	전	810.0	-	수산동	572-1	전	810.0	0.0	0.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	
156	-	수산동	572-2	대	235.0	-	수산동	572-2	대	235.0	0.0	0.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	
157	-	수산동	573	대	545.0	-	수산동	573	대	545.0	0.0	0.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	
158	-	수산동	575-2	대	109.0	-	수산동	575-2	대	109.0	0.0	0.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	
159	-	수산동	575-3	대	129.0	-	수산동	575-3	대	129.0	0.0	0.0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160	-	수산동	575-4	대	330.0	-	수산동	575-4	대	330.0	0.0	0.0	주**사토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	
161	-	수산동	575-5	도로	391.0	-	수산동	575-5	도로	391.0	0.0	0.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	
162	-	수산동	575-6	과수원	273.0	-	수산동	575-6	과수원	259.9	0.0	13.1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163	-	수산동	575-7	대	253.0	-	수산동	575-7	대	253.0	0.0	0.0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164	-	수산동	575-8	대	416.0	-	수산동	575-8	대	403.7	0.0	12.3	주**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165	-	수산동	575-11	도로	24.0	-	수산동	575-11	도로	4.9	0.0	19.1	주**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166	-	수산동	575-12	대	582.0	-	수산동	575-12	대	561.5	0.0	20.5	채**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7	-	수산동	575-17	과수원	23.0	-	수산동	575-17	과수원	23.0	0.0	0.0	배**(외 4명)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	
168	-	수산동	575-18	과수원	1.0	-	수산동	575-18	과수원	1.0	0.0	0.0	배**(외 4명)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	
169	-	수산동	575-19	도로	10.0	-	수산동	575-19	도로	10.0	0.0	0.0	주**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170	-	수산동	576-1	전	31.0	-	수산동	576-1	전	31.0	0.0	0.0	배**(외 4명)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	
171	-	수산동	577-1	대	330.0	-	수산동	577-1	대	330.0	0.0	0.0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72	-	수산동	577-3	전	322.0	-	수산동	577-3	전	322.0	0.0	0.0	채**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	
173	-	수산동	577-4	전	509.0	-	수산동	577-4	전	509.0	0.0	0.0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174	-	수산동	577-5	주차장	300.0	-	수산동	577-5	주차장	300.0	0.0	0.0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75	-	수산동	577-6	도로	309.0	-	수산동	577-6	도로	309.0	0.0	0.0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76	-	수산동	577-7	도로	8.0	-	수산동	577-7	도로	8.0	0.0	0.0	인천광역시남동구		
177	-	수산동	577-8	전	641.0	-	수산동	577-8	전	641.0	0.0	0.0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78	-	수산동	578-1	대	330.0	-	수산동	578-1	대	330.0	0.0	0.0	고**(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79	-	수산동	578-2	대	489.0	-	수산동	578-2	대	489.0	0.0	0.0	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80	-	수산동	578-3	도로	70.0	-	수산동	578-3	도로	70.0	0.0	0.0	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1694호

남동구 구보

2022. 7 28. 금요일

														덕골로 ***	
181	-	수산동	578-4	전	185.0	-	수산동	578-4	전	185.0	0.0	0.0	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82	-	수산동	578-7	전	1,717.0	-	수산동	578-7	전	1,717.0	0.0	0.0	고**(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83	-	수산동	578-8	전	93.0	-	수산동	578-8	전	93.0	0.0	0.0	인천광역시 남동구		
184	-	수산동	578-9	주차장	200.0	-	수산동	578-9	주차장	200.0	0.0	0.0	고**(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85	-	수산동	578-10	도로	68.0	-	수산동	578-10	도로	69.9	1.9	0.0	인천광역시 남동구		
186	-	수산동	578-11	도로	18.0	-	수산동	578-11	도로	18.0	0.0	0.0	인천광역시 남동구		
187	-	수산동	578-12	전	29.0	-	수산동	578-12	전	29.0	0.0	0.0	인천광역시 남동구		
188	-	수산동	579	전	2,043.0	-	수산동	579	전	2,026.0	0.0	17.0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89	-	수산동	580	전	688.0	-	수산동	580	전	688.0	0.0	0.0	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	
190	-	수산동	581	답	1,428.0	-	수산동	581	답	1,428.0	0.0	0.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191	-	수산동	581-1	전	661.0	-	수산동	581-1	전	661.0	0.0	0.0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	
192	-	수산동	582-1	전	2,453.0	-	수산동	582-1	전	2,403.3	0.0	49.7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93	-	수산동	583	전	1,368.0	-	수산동	583	전	1,368.0	0.0	0.0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194	-	수산동	584	전	1,038.0	-	수산동	584	전	1,038.0	0.0	0.0	황**(외 2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	
195	-	수산동	585-1	전	99.0	-	수산동	585-1	전	92.0	0.0	7.0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96	-	수산동	585-2	전	972.0	-	수산동	585-2	전	972.0	0.0	0.0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97	-	수산동	586-1	전	331.0	-	수산동	586-1	전	331.0	0.0	0.0	임**(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198	-	수산동	586-2	대	343.0	-	수산동	586-2	대	347.7	4.7	0.0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99	-	수산동	586-3	대	78.0	-	수산동	586-3	대	78.0	0.0	0.0	강**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200	-	수산동	586-4	대	411.0	-	수산동	586-4	대	411.0	0.0	0.0	강**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제1694호

남동구 구보

2022. 7 28. 금요일

201	-	수산동	586-5	도로	25.0	-	수산동	586-5	도로	25.0	0.0	0.0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202	-	수산동	586-6	도로	64.0	-	수산동	586-6	도로	64.0	0.0	0.0	한**(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203	-	수산동	586-7	주차장	192.0	-	수산동	586-7	주차장	193.0	1.0	0.0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204	-	수산동	586-8	도로	28.0	-	수산동	586-8	도로	28.0	0.0	0.0	강**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205	-	수산동	586-9	도로	4.0	-	수산동	586-9	도로	4.0	0.0	0.0	강**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206	-	수산동	586-12	전	49.0	-	수산동	586-12	전	49.0	0.0	0.0	한**(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207	-	수산동	587	전	736.0	-	수산동	587	전	716.5	0.0	19.5	윤**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	
208	-	수산동	587-1	대	680.0	-	수산동	587-1	대	676.6	0.0	3.4	윤**(외 1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	
209	-	수산동	587-2	대	330.0	-	수산동	587-2	대	330.0	0.0	0.0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	
210	-	수산동	587-3	전	443.0	-	수산동	587-3	전	443.0	0.0	0.0	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211	-	수산동	587-4	도로	25.0	-	수산동	587-4	도로	25.0	0.0	0.0	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212	-	수산동	587-5	전	90.0	-	수산동	587-5	전	90.0	0.0	0.0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	
213	-	수산동	587-11	전	360.0	-	수산동	587-11	전	357.2	0.0	2.8	윤**(외 1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	
214	-	수산동	587-12	대	1.0	-	수산동	587-12	대	1.0	0.0	0.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215	-	수산동	588	전	1,858.0	-	수산동	588	전	1,858.0	0.0	0.0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216	-	수산동	588-1	전	1,322.0	-	수산동	588-1	전	1,322.0	0.0	0.0	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217	-	수산동	589	전	1,122.0	-	수산동	589	전	1,122.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	
218	-	수산동	589-1	도로	3.0	-	수산동	589-1	도로	3.0	0.0	0.0	인천광역시남 동구		
219	-	수산동	590	전	139.0	-	수산동	590	전	139.0	0.0	0.0	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	
220	-	수산동	591	전	192.0	-	수산동	591	전	192.0	0.0	0.0	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	

제1694호

남동구 구보

2022. 7 28. 금요일

221	-	수산동	593-2	대	330.0	-	수산동	593-2	대	340.9	10.9	0.0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	
222	-	수산동	593-3	대	483.0	-	수산동	593-3	대	478.9	0.0	4.1	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223	-	수산동	593-6	전	932.0	-	수산동	593-6	전	932.0	0.0	0.0	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224	-	수산동	593-10	창고용 지	200.0	-	수산동	593-10	창고용 지	200.0	0.0	0.0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	
225	-	수산동	593-11	도로	7.0	-	수산동	593-11	도로	7.0	0.0	0.0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	
226	-	수산동	593-13	도로	6.0	-	수산동	593-13	도로	6.0	0.0	0.0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	
227	-	수산동	593-20	전	18.0	-	수산동	593-20	전	15.1	0.0	2.9	인천광역시 남동구		
228	-	수산동	593-21	도로	55.0	-	수산동	593-21	도로	58.8	3.8	0.0	인천광역시 남동구		
229	-	수산동	593-22	전	27.0	-	수산동	593-22	전	28.0	1.0	0.0	인천광역시 남동구		
230	-	수산동	593-23	도로	54.0	-	수산동	593-23	도로	51.5	0.0	2.5	인천광역시 남동구		
231	-	수산동	597-47	도로	1,961.0	-	수산동	597-47	도로	1,830.6	0.0	130.4	국(건설부)		
232	-	수산동	597-86	도로	1,929.0	-	수산동	597-86	도로	1,744.0	0.0	185.0	국(건설부)		
233	-	수산동	597-87	도로	1.0	-	수산동	597-87	도로	0.5	0.0	0.5	국(건설부)		
234	-	수산동	597-88	도로	4.0	-	수산동	597-88	도로	4.0	0.0	0.0	국(건설부)		
235	-	수산동	597-89	도로	8.0	-	수산동	597-89	도로	1.1	0.0	6.9	국(건설부)		
236	-	수산동	597-90	도로	83.0	-	수산동	597-90	도로	83.0	0.0	0.0	국(건설부)		
237	-	수산동	597-91	도로	4.0	-	수산동	597-91	도로	4.0	0.0	0.0	국(건설부)		
238	-	수산동	597-92	도로	32.0	-	수산동	597-92	도로	32.0	0.0	0.0	국(건설부)		
239	-	수산동	597-93	도로	57.0	-	수산동	597-93	도로	57.0	0.0	0.0	국(건설부)		
240	-	수산동	597-94	도로	121.0	-	수산동	597-94	도로	121.0	0.0	0.0	국(건설부)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지적확정조서

번호	종전 토지					확정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증가(㎡)	감소(㎡)	성명	주소	
1	-	수산동	319-4	도로	180.0	-	수산동	319-4	도로	180.0	0.0	0.0	인천광역시남동구		
2	-	수산동	323	대	988.0	-	수산동	323	대	988.0	0.0	0.0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	
3	-	수산동	323-4	도로	9.0	-	수산동	323-4	도로	9.0	0.0	0.0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	
4	-	수산동	323-5	도로	9.0	-	수산동	323-5	도로	9.0	0.0	0.0	인천광역시남동구		
5	-	수산동	323-7	도로	21.0	-	수산동	323-7	도로	21.0	0.0	0.0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	
6	-	수산동	334-1	종교용지	872.0	-	수산동	334-1	종교용지	872.0	0.0	0.0	재**인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7	-	수산동	334-3	전	404.0	-	수산동	334-3	전	404.0	0.0	0.0	재**인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8	-	수산동	334-4	도로	60.0	-	수산동	334-4	도로	60.0	0.0	0.0	재**인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9	-	수산동	335	대	524.0	-	수산동	335	대	524.0	0.0	0.0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10	-	수산동	335-1	도로	18.0	-	수산동	335-1	도로	18.0	0.0	0.0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11	-	수산동	336	대	793.0	-	수산동	336	대	793.0	0.0	0.0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12	-	수산동	336-1	대	325.0	-	수산동	336-1	대	325.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13	-	수산동	336-2	대	13.0	-	수산동	336-2	대	13.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14	-	수산동	336-3	대	59.0	-	수산동	336-3	대	59.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제1694호

남동구 구보

2022. 7 28. 금요일

15	-	수산동	337	전	195.0	-	수산동	337	전	195.0	0.0	0.0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16	-	수산동	338-2	종교용 지	350.0	-	수산동	338-2	종교용 지	365.4	15.4	0.0	재**인기독 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17	-	수산동	338-3	대	284.0	-	수산동	338-3	대	284.0	0.0	0.0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18	-	수산동	338-4	전	374.0	-	수산동	338-4	전	374.0	0.0	0.0	재**인기독 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19	-	수산동	338-5	전	407.0	-	수산동	338-5	전	407.0	0.0	0.0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20	-	수산동	338-6	도로	81.0	-	수산동	338-6	도로	81.0	0.0	0.0	재**인기독 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21	-	수산동	338-7	종교용 지	65.0	-	수산동	338-7	종교용 지	57.0	0.0	8.0	재**인기독 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22	-	수산동	338-8	도로	59.0	-	수산동	338-8	도로	59.0	0.0	0.0	재**인기독 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23	-	수산동	338-9	전	64.0	-	수산동	338-9	전	57.0	0.0	7.0	재**인기독 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24	-	수산동	338-12	도로	1,048.0	-	수산동	338-12	도로	1,042.9	0.0	5.1	인천광역시남 동구		
25	-	수산동	339	대	190.0	-	수산동	339	대	190.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	
26	-	수산동	339-1	전	60.0	-	수산동	339-1	전	60.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	
27	-	수산동	339-2	도로	18.0	-	수산동	339-2	도로	18.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	
28	-	수산동	340	대	196.0	-	수산동	340	대	196.0	0.0	0.0	조**(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29	-	수산동	340-1	도로	17.0	-	수산동	340-1	도로	17.0	0.0	0.0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 ***	

제1694호

남동구 구보

2022. 7 28. 금요일

30	-	수산동	340-2	대	138.0	-	수산동	340-2	대	138.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	
31	-	수산동	340-3	전	196.0	-	수산동	340-3	전	186.4	0.0	9.6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	
32	-	수산동	340-4	전	68.0	-	수산동	340-4	전	68.0	0.0	0.0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 ***	
33	-	수산동	501-1	도로	225.0	-	수산동	501-1	도로	225.0	0.0	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골로 ***		
34	-	수산동	502-1	도로	10.0	-	수산동	502-1	도로	10.0	0.0	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골로 ***		
35	-	수산동	504	전	298.0	-	수산동	504	전	298.0	0.0	0.0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	
36	-	수산동	505	대	889.0	-	수산동	505	대	880.6	0.0	8.4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37	-	수산동	505-1	전	50.0	-	수산동	505-1	전	50.0	0.0	0.0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38	-	수산동	510	전	119.0	-	수산동	510	전	128.6	9.6	0.0	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골로 ***	
39	-	수산동	511-1	전	760.0	-	수산동	511-1	전	760.0	0.0	0.0	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골로 ***	
40	-	수산동	511-2	대	1,175.0	-	수산동	511-2	대	1,175.0	0.0	0.0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41	-	수산동	511-4	대	33.0	-	수산동	511-4	대	33.0	0.0	0.0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42	-	수산동	511-6	대	15.0	-	수산동	511-6	대	15.0	0.0	0.0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43	-	수산동	512-1	대	868.0	-	수산동	512-1	대	868.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एको중앙 ***	
44	-	수산동	512-2	대	594.0	-	수산동	512-2	대	570.1	0.0	23.9	이**(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45	-	수산동	512-3	대	178.0	-	수산동	512-3	대	178.0	0.0	0.0	이**(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46	-	수산동	512-4	전	10.0	-	수산동	512-4	전	10.0	0.0	0.0	이**(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47	-	수산동	512-6	도로	138.0	-	수산동	512-6	도로	138.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एको중앙 ***	
48	-	수산동	512-8	도로	58.0	-	수산동	512-8	도로	58.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एको중앙 ***	
49	-	수산동	512-10	도로	44.0	-	수산동	512-10	도로	44.0	0.0	0.0	이**(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50	-	수산동	512-11	도로	67.0	-	수산동	512-11	도로	67.0	0.0	0.0	이**(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51	-	수산동	512-12	도로	351.0	-	수산동	512-12	도로	351.0	0.0	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골로 ***		

제1694호

남동구 구보

2022. 7 28. 금요일

52	-	수산동	513	대	318.0	-	수산동	513	대	318.0	0.0	0.0	이**(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53	-	수산동	514-1	대	433.0	-	수산동	514-1	대	433.0	0.0	0.0	손**사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	
54	-	수산동	514-3	도로	67.0	-	수산동	514-3	도로	67.0	0.0	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구		
55	-	수산동	515	대	329.0	-	수산동	515	대	329.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56	-	수산동	516	전	843.0	-	수산동	516	전	836.4	0.0	6.6	손**사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	
57	-	수산동	517-1	대	327.0	-	수산동	517-1	대	327.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58	-	수산동	517-2	전	129.0	-	수산동	517-2	전	129.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59	-	수산동	518-1	전	1,424.0	-	수산동	518-1	전	1,424.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60	-	수산동	518-2	대	316.0	-	수산동	518-2	대	316.0	0.0	0.0	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61	-	수산동	518-4	도로	110.0	-	수산동	518-4	도로	110.0	0.0	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구		
62	-	수산동	519-1	대	306.0	-	수산동	519-1	대	306.0	0.0	0.0	황**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	
63	-	수산동	519-2	전	860.0	-	수산동	519-2	전	860.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64	-	수산동	520	전	50.0	-	수산동	520	전	50.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65	-	수산동	521-1	도로	58.0	-	수산동	521-1	도로	58.0	0.0	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구		
66	-	수산동	522	대	158.0	-	수산동	522	대	158.0	0.0	0.0	김**(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67	-	수산동	522-1	대	708.0	-	수산동	522-1	대	708.0	0.0	0.0	정**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	
68	-	수산동	523	대	699.0	-	수산동	523	대	677.1	0.0	21.9	김**(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69	-	수산동	523-1	대	100.0	-	수산동	523-1	대	100.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70	-	수산동	523-2	대	33.0	-	수산동	523-2	대	33.0	0.0	0.0	김**(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71	-	수산동	523-3	대	14.0	-	수산동	523-3	대	14.0	0.0	0.0	김**(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72	-	수산동	524	대	1,144.0	-	수산동	524	대	1,128.7	0.0	15.3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73	-	수산동	525-2	종교용지	988.0	-	수산동	525-2	종교용지	988.0	0.0	0.0	김**(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제1694호

남동구 구보

2022. 7 28. 금요일

74	-	수산동	525-3	대	261.0	-	수산동	525-3	대	300.2	39.2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75	-	수산동	525-8	도로	161.0	-	수산동	525-8	도로	161.0	0.0	0.0	인천광역시남 동구		
76	-	수산동	529-1	종교용 지	330.0	-	수산동	529-1	종교용 지	336.0	6.0	0.0	대**수교장로 회경성교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77	-	수산동	529-2	전	468.0	-	수산동	529-2	전	468.0	0.0	0.0	임**(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78	-	수산동	529-3	대	499.0	-	수산동	529-3	대	499.0	0.0	0.0	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79	-	수산동	529-4	대	196.0	-	수산동	529-4	대	167.6	0.0	28.4	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80	-	수산동	529-5	전	1,047.0	-	수산동	529-5	전	1,047.0	0.0	0.0	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81	-	수산동	529-7	도로	23.0	-	수산동	529-7	도로	23.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82	-	수산동	529-8	대	659.0	-	수산동	529-8	대	617.0	0.0	42.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83	-	수산동	529-9	도로	9.0	-	수산동	529-9	도로	9.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84	-	수산동	529-10	도로	1,788.0	-	수산동	529-10	도로	1,785.4	0.0	2.6	인천광역시남 동구		
85	-	수산동	529-14	전	28.0	-	수산동	529-14	전	28.0	0.0	0.0	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86	-	수산동	535	전	663.0	-	수산동	535	전	663.0	0.0	0.0	유**영농조합 법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	
87	-	수산동	535-1	전	990.0	-	수산동	535-1	전	990.0	0.0	0.0	유**영농조합 법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	
88	-	수산동	536	대	1,068.0	-	수산동	536	대	1,068.0	0.0	0.0	최**(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89	-	수산동	536-8	전	1.0	-	수산동	536-8	전	1.0	0.0	0.0	인천광역시남 동구		
90	-	수산동	537	전	1,117.0	-	수산동	537	전	1,117.0	0.0	0.0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91	-	수산동	537-2	전	427.0	-	수산동	537-2	전	427.0	0.0	0.0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92	-	수산동	537-3	전	439.0	-	수산동	537-3	전	439.0	0.0	0.0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93	-	수산동	538-1	대	320.0	-	수산동	538-1	대	301.7	0.0	18.3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 ***	
94	-	수산동	538-2	대	491.0	-	수산동	538-2	대	491.0	0.0	0.0	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	
95	-	수산동	538-3	잡종지	300.0	-	수산동	538-3	잡종지	300.0	0.0	0.0	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제1694호

남동구 구보

2022. 7 28. 금요일

96	-	수산동	538-4	대	70.0	-	수산동	538-4	대	70.0	0.0	0.0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 ***	
97	-	수산동	538-6	전	228.0	-	수산동	538-6	전	228.0	0.0	0.0	한**(외 2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98	-	수산동	538-7	대	397.0	-	수산동	538-7	대	398.0	1.0	0.0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99	-	수산동	538-8	대	681.0	-	수산동	538-8	대	681.0	0.0	0.0	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00	-	수산동	538-9	전	337.0	-	수산동	538-9	전	359.9	22.9	0.0	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	
101	-	수산동	538-10	도로	28.0	-	수산동	538-10	도로	28.0	0.0	0.0	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	
102	-	수산동	538-12	전	1,141.0	-	수산동	538-12	전	1,141.0	0.0	0.0	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	
103	-	수산동	538-15	대	4.0	-	수산동	538-15	대	4.0	0.0	0.0	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04	-	수산동	538-16	대	3.0	-	수산동	538-16	대	3.0	0.0	0.0	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05	-	수산동	538-20	대	8.0	-	수산동	538-20	대	8.0	0.0	0.0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 ***	
106	-	수산동	538-22	대	12.0	-	수산동	538-22	대	7.4	0.0	4.6	인천광역시남 동구		
107	-	수산동	538-23	대	6.0	-	수산동	538-23	대	6.0	0.0	0.0	인천광역시남 동구		
108	-	수산동	538-28	전	78.0	-	수산동	538-28	전	97.5	19.5	0.0	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	
109	-	수산동	539	전	50.0	-	수산동	539	전	50.0	0.0	0.0	서**		
110	-	수산동	540-2	전	234.0	-	수산동	540-2	전	234.0	0.0	0.0	한**(외 2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111	-	수산동	540-3	전	132.0	-	수산동	540-3	전	132.0	0.0	0.0	한**(외 2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112	-	수산동	540-5	전	1.0	-	수산동	540-5	전	1.0	0.0	0.0	인천광역시남 동구		
113	-	수산동	541-1	대	554.0	-	수산동	541-1	대	554.0	0.0	0.0	한**(외 2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114	-	수산동	541-3	전	280.0	-	수산동	541-3	전	280.0	0.0	0.0	한**(외 2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115	-	수산동	541-4	도로	26.0	-	수산동	541-4	도로	26.0	0.0	0.0	한**(외 2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116	-	수산동	542	전	2,684.0	-	수산동	542	전	2,684.0	0.0	0.0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17	-	수산동	543	전	483.0	-	수산동	543	전	483.0	0.0	0.0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 ***	

제1694호

남동구 구보

2022. 7 28. 금요일

118	-	수산동	544-1	대	661.0	-	수산동	544-1	대	661.0	0.0	0.0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19	-	수산동	544-2	전	1,349.0	-	수산동	544-2	전	1,349.0	0.0	0.0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20	-	수산동	544-3	도로	30.0	-	수산동	544-3	도로	30.0	0.0	0.0	인천광역시 남동구		
121	-	수산동	544-4	전	330.0	-	수산동	544-4	전	330.0	0.0	0.0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122	-	수산동	545	대	188.0	-	수산동	545	대	188.0	0.0	0.0	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	
123	-	수산동	546	전	615.0	-	수산동	546	전	620.3	5.3	0.0	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	
124	-	수산동	547-1	전	354.0	-	수산동	547-1	전	359.1	5.1	0.0	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	
125	-	수산동	547-2	대	350.0	-	수산동	547-2	대	350.0	0.0	0.0	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	
126	-	수산동	547-3	전	23.0	-	수산동	547-3	전	23.0	0.0	0.0	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	
127	-	수산동	548	종교용지	1,132.0	-	수산동	548	종교용지	1,120.5	0.0	11.5	새**교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28	-	수산동	548-1	임야	161.0	-	수산동	548-1	임야	161.0	0.0	0.0	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	
129	-	수산동	548-3	임야	208.0	-	수산동	548-3	임야	208.0	0.0	0.0	새**교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30	-	수산동	549-1	전	15.0	-	수산동	549-1	전	15.0	0.0	0.0	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	
131	-	수산동	549-2	전	90.0	-	수산동	549-2	전	90.0	0.0	0.0	새**교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32	-	수산동	549-3	도로	82.0	-	수산동	549-3	도로	82.0	0.0	0.0	인천광역시 남동구		
133	-	수산동	549-4	도로	14.0	-	수산동	549-4	도로	11.2	0.0	2.8	인천광역시 남동구		
134	-	수산동	551-3	도로	167.0	-	수산동	551-3	도로	167.0	0.0	0.0	인천광역시 남동구		
135	-	수산동	553	전	297.0	-	수산동	553	전	297.0	0.0	0.0	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36	-	수산동	553-2	대	248.0	-	수산동	553-2	대	248.0	0.0	0.0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37	-	수산동	553-3	대	80.0	-	수산동	553-3	대	80.0	0.0	0.0	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38	-	수산동	553-4	대	202.0	-	수산동	553-4	대	218.6	16.6	0.0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수골로 ***	
139	-	수산동	553-9	전	666.0	-	수산동	553-9	전	666.0	0.0	0.0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40	-	수산동	553-10	대	6.0	-	수산동	553-10	대	6.0	0.0	0.0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41	-	수산동	553-11	대	33.0	-	수산동	553-11	대	33.0	0.0	0.0	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42	-	수산동	553-12	전	224.0	-	수산동	553-12	전	224.0	0.0	0.0	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43	-	수산동	555-1	대	612.0	-	수산동	555-1	대	612.0	0.0	0.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44	-	수산동	555-2	전	235.0	-	수산동	555-2	전	235.0	0.0	0.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45	-	수산동	556-1	대	53.0	-	수산동	556-1	대	57.5	4.5	0.0	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골로 ***
146	-	수산동	566	전	426.0	-	수산동	566	전	426.0	0.0	0.0	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
147	-	수산동	567	답	5,448.0	-	수산동	567	답	5,448.0	0.0	0.0	임**(외 1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
148	-	수산동	568	전	407.0	-	수산동	568	전	407.0	0.0	0.0	임**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
149	-	수산동	569	전	2,215.0	-	수산동	569	전	2,215.0	0.0	0.0	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념이길 ***
150	-	수산동	570	전	1,101.0	-	수산동	570	전	1,101.0	0.0	0.0	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행정로 ***
151	-	수산동	571-1	전	864.0	-	수산동	571-1	전	871.7	7.7	0.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
152	-	수산동	571-2	대	30.0	-	수산동	571-2	대	30.0	0.0	0.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
153	-	수산동	571-4	전	1,060.0	-	수산동	571-4	전	1,060.0	0.0	0.0	윤**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 ***
154	-	수산동	572-1	전	810.0	-	수산동	572-1	전	810.0	0.0	0.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
155	-	수산동	572-2	대	235.0	-	수산동	572-2	대	235.0	0.0	0.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
156	-	수산동	573	대	545.0	-	수산동	573	대	545.0	0.0	0.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
157	-	수산동	575-2	대	109.0	-	수산동	575-2	대	109.0	0.0	0.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
158	-	수산동	575-3	대	129.0	-	수산동	575-3	대	129.0	0.0	0.0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159	-	수산동	575-4	대	330.0	-	수산동	575-4	대	330.0	0.0	0.0	주**사토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
160	-	수산동	575-5	도로	391.0	-	수산동	575-5	도로	391.0	0.0	0.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
161	-	수산동	575-6	과수원	273.0	-	수산동	575-6	과수원	259.9	0.0	13.1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162	-	수산동	575-7	대	253.0	-	수산동	575-7	대	253.0	0.0	0.0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163	-	수산동	575-8	대	416.0	-	수산동	575-8	대	403.7	0.0	12.3	주**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164	-	수산동	575-11	도로	24.0	-	수산동	575-11	도로	4.9	0.0	19.1	주**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165	-	수산동	575-12	대	582.0	-	수산동	575-12	대	561.5	0.0	20.5	채**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6	-	수산동	575-17	과수원	23.0	-	수산동	575-17	과수원	23.0	0.0	0.0	배**(외 4명)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
167	-	수산동	575-18	과수원	1.0	-	수산동	575-18	과수원	1.0	0.0	0.0	배**(외 4명)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
168	-	수산동	575-19	도로	10.0	-	수산동	575-19	도로	10.0	0.0	0.0	주**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169	-	수산동	576-1	전	31.0	-	수산동	576-1	전	31.0	0.0	0.0	배**(외 4명)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
170	-	수산동	577-1	대	330.0	-	수산동	577-1	대	330.0	0.0	0.0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71	-	수산동	577-3	전	322.0	-	수산동	577-3	전	322.0	0.0	0.0	채**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
172	-	수산동	577-4	전	509.0	-	수산동	577-4	전	509.0	0.0	0.0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173	-	수산동	577-5	주차장	300.0	-	수산동	577-5	주차장	300.0	0.0	0.0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74	-	수산동	577-6	도로	309.0	-	수산동	577-6	도로	309.0	0.0	0.0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75	-	수산동	577-7	도로	8.0	-	수산동	577-7	도로	8.0	0.0	0.0	인천광역시남 동구	
176	-	수산동	577-8	전	641.0	-	수산동	577-8	전	641.0	0.0	0.0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77	-	수산동	578-1	대	330.0	-	수산동	578-1	대	330.0	0.0	0.0	고**(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78	-	수산동	578-2	대	489.0	-	수산동	578-2	대	489.0	0.0	0.0	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79	-	수산동	578-3	도로	70.0	-	수산동	578-3	도로	70.0	0.0	0.0	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80	-	수산동	578-4	전	185.0	-	수산동	578-4	전	185.0	0.0	0.0	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81	-	수산동	578-7	전	1,717.0	-	수산동	578-7	전	1,717.0	0.0	0.0	고**(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82	-	수산동	578-8	전	93.0	-	수산동	578-8	전	93.0	0.0	0.0	인천광역시남 동구	
183	-	수산동	578-9	주차장	200.0	-	수산동	578-9	주차장	200.0	0.0	0.0	고**(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84	-	수산동	578-10	도로	68.0	-	수산동	578-10	도로	69.9	1.9	0.0	인천광역시남 동구	
185	-	수산동	578-11	도로	18.0	-	수산동	578-11	도로	18.0	0.0	0.0	인천광역시남	

													동구		
186	-	수산동	578-12	전	29.0	-	수산동	578-12	전	29.0	0.0	0.0	인천광역시남동구		
187	-	수산동	579	전	2,043.0	-	수산동	579	전	2,026.0	0.0	17.0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88	-	수산동	580	전	688.0	-	수산동	580	전	688.0	0.0	0.0	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	
189	-	수산동	581	답	1,428.0	-	수산동	581	답	1,428.0	0.0	0.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190	-	수산동	581-1	전	661.0	-	수산동	581-1	전	661.0	0.0	0.0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	
191	-	수산동	582-1	전	2,453.0	-	수산동	582-1	전	2,403.3	0.0	49.7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92	-	수산동	583	전	1,368.0	-	수산동	583	전	1,368.0	0.0	0.0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193	-	수산동	584	전	1,038.0	-	수산동	584	전	1,038.0	0.0	0.0	황**(외 2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	
194	-	수산동	585-1	전	99.0	-	수산동	585-1	전	92.0	0.0	7.0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95	-	수산동	585-2	전	972.0	-	수산동	585-2	전	972.0	0.0	0.0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96	-	수산동	586-1	전	331.0	-	수산동	586-1	전	331.0	0.0	0.0	임**(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197	-	수산동	586-2	대	343.0	-	수산동	586-2	대	347.7	4.7	0.0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198	-	수산동	586-3	대	78.0	-	수산동	586-3	대	78.0	0.0	0.0	강**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199	-	수산동	586-4	대	411.0	-	수산동	586-4	대	411.0	0.0	0.0	강**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200	-	수산동	586-5	도로	25.0	-	수산동	586-5	도로	25.0	0.0	0.0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201	-	수산동	586-6	도로	64.0	-	수산동	586-6	도로	64.0	0.0	0.0	한**(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202	-	수산동	586-7	주차장	192.0	-	수산동	586-7	주차장	193.0	1.0	0.0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203	-	수산동	586-8	도로	28.0	-	수산동	586-8	도로	28.0	0.0	0.0	강**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204	-	수산동	586-9	도로	4.0	-	수산동	586-9	도로	4.0	0.0	0.0	강**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205	-	수산동	586-12	전	49.0	-	수산동	586-12	전	49.0	0.0	0.0	한**(외 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206	-	수산동	587	전	736.0	-	수산동	587	전	716.5	0.0	19.5	윤**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	
207	-	수산동	587-1	대	680.0	-	수산동	587-1	대	676.6	0.0	3.4	윤**(외 1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	

제1694호

남동구 구보

2022. 7 28. 금요일

208	-	수산동	587-2	대	330.0	-	수산동	587-2	대	330.0	0.0	0.0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	
209	-	수산동	587-3	전	443.0	-	수산동	587-3	전	443.0	0.0	0.0	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210	-	수산동	587-4	도로	25.0	-	수산동	587-4	도로	25.0	0.0	0.0	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211	-	수산동	587-5	전	90.0	-	수산동	587-5	전	90.0	0.0	0.0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	
212	-	수산동	587-11	전	360.0	-	수산동	587-11	전	357.2	0.0	2.8	윤**(외 1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	
213	-	수산동	587-12	대	1.0	-	수산동	587-12	대	1.0	0.0	0.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214	-	수산동	588	전	1,858.0	-	수산동	588	전	1,858.0	0.0	0.0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215	-	수산동	588-1	전	1,322.0	-	수산동	588-1	전	1,322.0	0.0	0.0	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216	-	수산동	589	전	1,122.0	-	수산동	589	전	1,122.0	0.0	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	
217	-	수산동	589-1	도로	3.0	-	수산동	589-1	도로	3.0	0.0	0.0	인천광역시남동구		
218	-	수산동	590	전	139.0	-	수산동	590	전	139.0	0.0	0.0	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	
219	-	수산동	591	전	192.0	-	수산동	591	전	192.0	0.0	0.0	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	
220	-	수산동	593-2	대	330.0	-	수산동	593-2	대	340.9	10.9	0.0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	
221	-	수산동	593-3	대	483.0	-	수산동	593-3	대	478.9	0.0	4.1	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222	-	수산동	593-6	전	932.0	-	수산동	593-6	전	932.0	0.0	0.0	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	
223	-	수산동	593-10	창고용지	200.0	-	수산동	593-10	창고용지	200.0	0.0	0.0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	
224	-	수산동	593-11	도로	7.0	-	수산동	593-11	도로	7.0	0.0	0.0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	
225	-	수산동	593-13	도로	6.0	-	수산동	593-13	도로	6.0	0.0	0.0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	
226	-	수산동	593-20	전	18.0	-	수산동	593-20	전	15.1	0.0	2.9	인천광역시남동구		
227	-	수산동	593-21	도로	55.0	-	수산동	593-21	도로	58.8	3.8	0.0	인천광역시남동구		
228	-	수산동	593-22	전	27.0	-	수산동	593-22	전	28.0	1.0	0.0	인천광역시남동구		
229	-	수산동	593-23	도로	54.0	-	수산동	593-23	도로	51.5	0.0	2.5	인천광역시남동구		

제1694호

남동구 구보

2022. 7 28. 금요일

230	-	수산동	597-86	도로	1,929.0	-	수산동	597-86	도로	1,744.0	0.0	185.0	국(건설부)		
231	-	수산동	597-87	도로	1.0	-	수산동	597-87	도로	0.5	0.0	0.5	국(건설부)		
232	-	수산동	597-88	도로	4.0	-	수산동	597-88	도로	4.0	0.0	0.0	국(건설부)		
233	-	수산동	597-89	도로	8.0	-	수산동	597-89	도로	1.1	0.0	6.9	국(건설부)		
234	-	수산동	597-90	도로	83.0	-	수산동	597-90	도로	83.0	0.0	0.0	국(건설부)		
235	-	수산동	597-91	도로	4.0	-	수산동	597-91	도로	4.0	0.0	0.0	국(건설부)		
236	-	수산동	597-92	도로	32.0	-	수산동	597-92	도로	32.0	0.0	0.0	국(건설부)		
237	-	수산동	597-93	도로	57.0	-	수산동	597-93	도로	57.0	0.0	0.0	국(건설부)		
238	-	수산동	597-94	도로	121.0	-	수산동	597-94	도로	121.0	0.0	0.0	국(건설부)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경계미확정토지조서

2,865.
0

2,734.6

번호	종전 토지					확정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증가(m ²)	감소(m ²)	성명	주소	
1	-	수산동	521	전	904	-	수산동	521	전	904	0.0	0.0	정**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	-	수산동	597-4 7	도로	1,961. 00	-	수산동	597-47	도로	1,830.60	0.0	130.4	국(건설부)		

WORK_SEQ

2854215

3152664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398호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11-54호(2011.7.1.)로 사업시행인가 된 상인천초교 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 열람 통지가 불가한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5일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11-1일원
3. 사업시행자 :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 공고기간 : 2022. 7. 26. ~ 2022. 8. 9. (14일 이상)
5. 공시송달 사유 :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6. 공시송달 문건 : 수용재결신청서류 열람 공고문 및 통지공문(붙임-1, 2)
7. 공시송달 대상 : 별지(붙임-3)
8. 기타사항은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032-453-83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남동구 공고 제2022-1295호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1-54호(2011. 7. 1.)로 사업시행인가된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7일

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 업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11-1 일원
3. 사업 시행자: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2. 7. 7. ~ 2022. 7. 21. (14일 이상)
6. 열람장소 및 방법: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방문 또는 전화(☎453-8392)
7. 열람서류: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8. 기 타: 관계서류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및 조합사무실(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37번길 23, 403호 ☎032-421-463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통지문

구민을 편하게 경계를 획기차게 남동을 새롭게



남 동 구



수신 열람대상자 귀하

(경유)

제목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통지

1.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도 제4회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및 손실보상 재결'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에 대한 열람 공고를 붙임과 같이 통지하며,
3. 수용대상 토지등소유자 등 관계인은 공고 내용 열람 및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도시재생과 (☎ 032-453-8392)로 연락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공고문[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1부.
2. 의견서 1부. 끝.

남 동 구



주무관 박지훈 도시정비담당 박현웅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협조자

시행 도시재생과-8397 (2022. 7. 6.) 접수

우 216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http://www.namdong.go.kr>전화번호 032-453-8392 팩스번호 032-453-2969 / ranshelly@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개인정보는 철저히 지키GO! 타인의 개인정보는 소중히 잠그GO!

[붙임-3] 수용재결 열람공고 공시송달 대상

일련 번호	수용(사용)할 물건의 표시		소유자 및 영업권자			비고
	동(리) 명	관련 지번	관련 대상	성명	현주소	
1	간석동	321-23, 10*호	이주 정착금	정*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화로13번길9, 10*호(간석동, 삼성빌라)	폐문부재
2	간석동	419-18, 20*호	이주 정착금	차*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15번길 13, *동 20*호(간석동, 태창빌라)	폐문부재
3	간석동	419-18, 20*호	이사비	김*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15번길 13, *동 20*호(간석동, 태창빌라)	폐문부재
4	간석동	308-15, 지층 *호	이주 정착금	이*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11번길 44, 지층 *호(간석동)	폐문부재
5	간석동	447-1	이주 정착금	남*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01번길 38-* (간석동)	폐문부재
6	간석동	442-8	이주 정착금	이*봉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01번길 3* (간석동)	폐문부재
7	간석동	429-18	이사비	박*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30번길 34, 50*호(간석동, 미지빌)	수취인불명
8	간석동	444-6, 10*호	이사비	황*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97번길 79, 10*호(간석동, 영생빌라)	이사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407호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26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에 따라 개정 내용 반영 및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 및 세부 기준 등을 규정
하여,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체계적인 공유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 안 제6조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준 신설: 안 제11조
 -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개정 : 안 제15조 외 9개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규정 반영
 - 수익계약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신설 : 조례안 제19조의2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갱신 조항 신설 : 조례안 제21조의2
 - 일반재산의 대부 시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신설 : 조례안 제27조의 2
 -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면사항 추가 신설 : 조례안 제31조
 -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추가 신설 : 조례안 제39조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8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재무과 / ☎ 453-2273, FAX 453-226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5. 개정조례(안): 별첨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4. 21.)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 반영 및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 및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

☐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 안 제6조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준 신설 : 안 제11조
 -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개정 : 안 제15조 외 9개조
-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사항 규정 반영
- 수익계약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신설 : 조례안 제19조의 2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갱신 조항 신설 : 조례안 제21조의 2
 - 일반재산의 대부 시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신설 : 조례안 제27조의 2
 -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면사항 추가 신설 : 조례안 제31조
 -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조항 추가 신설 : 조례안 제39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제7조의2제4항”을 “제10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 중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를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제4호”를 “법 제16조제2항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2.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중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중요 사항”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또는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취득의 경우 1건당 면적이 1천제곱미터, 토지처분의 경우 1건당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제15조제1항 중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을 “무상사용허가대상”으로 한

다.

제18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수익계약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3항제20호”를 “영 제13조제3항제2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수익 허가하는”을 “사용허가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구유 행정재산의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직전연도 포함)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2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제27조의2(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9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 중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 등 2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 및 12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하도록”을 각각 “사용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⑦ 구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료등을 10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중 “6월 이내 3회 분납”을 “연 6회 이내 분납”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3호”를 “영 제39조제1항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을 “영 제3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5조 제2항”을 “영 제45조제2항”으로, “10년”을 “20년”으로 한다.

제39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8.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9.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제47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65조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의 제목“(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를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 또는”을 “사용허가 또는”으로, “사용·수익허가를”을 “사용허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 또는”을 “사용허가 또는”으로, “사용·수익허가를”을 “사용허가를”로 한다.

②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수익하려는”를 “사용하려는”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공용 등 필요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를 “(공용 등 필요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③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별표 1]

공용면적 산출 산식(제30조 관련)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전부개정 2016. 3. 11.)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남동구 공유재산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③ (생략) ④ <u>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⑤·⑥ (생략)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전부개정 2016. 3. 11.) ① ----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u>제10조의3제4항</u> ----- ----- -----. ②·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⑤·⑥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자격요건) <u>영 제7조의2 제1항제3호</u> 에 따른 민간위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다.	제3조의2(자격요건) <u>영 제10조의3 제1항제3호</u> ----- ----- ----- -----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u>법 제16조제2항제4호</u> 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u>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u>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u>법 제16조제2항제6호</u> ----- ----- --. 1. (현행과 같음) 2. <u>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u>

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생략)

② (생략)

제6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중요 사항을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5호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
-----공
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

제7조(실태조사) ① -----

----- 실시하
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
-----.

②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
격 또는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
와 같이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및 처
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
산

2. 토지취득의 경우 1건당 면적
이 1천제곱미터, 토지처분의
경우 1건당 면적이 2천제곱미
터 이상인 토지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재산에 한하며, 해당 토지는
유상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생략)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
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
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
조개정 2009. 6. 19.)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 무상사용허가대상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현

행과 같음)

② -----

--- 사용허가-----

제19조(사용허가) -----

--- 사용허가-----

1. ~ 4. (생 략)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과 관련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생 략)

제19조의2(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급고로 지정된 은행에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수입기관에게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실 등의 공간을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신 설>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허가-----

6. 사용허가-----

7.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수익계약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

----- 사
용-----.

1.·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

1. ----- 사
용-----

2. -----

----- 사용허가하는 -----
--

3.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구유 행정재산의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⑤·⑥ (생략)

<신설>

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

-- 사용허가부-----

-----.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사용허가-----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허가-----

-----.

④·⑤·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직전연도 포함)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
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
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
익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24조
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 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
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
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
산

3. ~ 6. (생 략)

제27조(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 재산의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
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 1.·2. (생 략)
3. 주거용 건물을 대부하는 경
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사용허
가-----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 매각 대상 등) -----

-----.

1. (현행과 같음)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제8
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

3. ~ 6. (현행과 같음)

제27조(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2. (현행과 같음)
3. -----
--. ---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

여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9, 일부개정 2015. 7. 31, 일부개정 2018.3.20, 2019. 7. 12.)

4. (생략)

④·⑤ (생략)

<신설>

제29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② 삭제

③ (생략)

자-----

--

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의 2(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영 제29조제1항 제28호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9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

----- 감정평가법인등 2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이 -----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 및 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③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으며,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은 경우 전액 감면

④ -----
----- 감정평가법
인등-----

-----.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 사용허가-----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

1. · 2. (현행과 같음)

③ ----- 사용-----

-----.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31,
개정 2016. 3. 11.)

④ (생 략)

⑤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
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
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도록 허
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
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
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
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
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
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
·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

----- 사용하도록 -----

-----.

⑥ -----

----- 사용하도록 -

-----.

1. ~ 4. (현행과 같음)

⑦ 구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료등을 10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
가 및 대부) ① -----

----- 사용
허가-----

-----.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생략)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와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을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1. ~ 3. (생략)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략)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일부개정 201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용허가-----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 사용허가-----

-----.

1. ~ 3.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7. 5. 10, 일부개정 2018.3.20, 2019. 7. 12.)

1. (생략)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④ (생략)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3. 12. 27, 2017. 5. 10, 일부개정 2018.3.20.)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3. (생략)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 연 6회 이내 분납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삭제>

2.·3. (현행과 같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③·④ (생략)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② 영 제39조제1항제3호-----

-----.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

----- 10년

-----.

② ----- 영 제45조제2항-----

----- 20년 -----

-----.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일부개정 2013. 12. 27, 전부개정 2016. 3. 11., 2019. 7. 12.)

1. ~ 6.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있는 경우) -----

1. ~ 6. (현행과 같음)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8.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9.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후단 신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 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일부개정 2016. 9. 23, 일부개정 2018.3.20, 2019. 7. 12.)

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

--.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

흥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

라 공모방식을 적용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

-----.

-- 감정평가법인등-----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408호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26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에 따라 개정 내용 반영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
로써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개정 :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의 1서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규정 반영
 - 영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시 사용인은 구에서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에 납부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8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재무과 / ☎ 453-2273, FAX 453-226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5. 개정규칙(안): 별첨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4. 21.)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 반영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

☐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개정 : 별지 제17호서식, 별지제20호의1 서식
- 기타사항
 - 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규정 개정 :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제6조

☐ 본 문 : “별첨”☐ 별지서식: “별첨”☐ 참고자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의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 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 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와 관련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 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의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에서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본 구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그 밖에 본 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한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구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9호 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남동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

제2조 대부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일간)

제3조 대부료는 연액 금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 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앞에서 말한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한다. “을”은 대부받은 재산과 관련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6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갑”이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의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 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갑이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 · 해지로 인하

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고 각각 1통씩 갖는다.

년 월 일

임대자(갑)

남동구청장 ○○○ (인)

임차자(을)

(인)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

대부(사용허가) 및 매수신청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 부
()매 수]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 화 번 호		
⑤신청내용						
재 산 의 표 시			신청면적 (㎡)	용 도	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1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매수] 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0호의1 서식]

(앞면)

변 상 금 부 과 사 전 통 지 서						
대상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			점유면적 (㎡)	부과기간	변상금 [예상] (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 적(㎡)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1조 규정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불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불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인)

귀 하

(뒷면)

변상금 서류통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성

※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처 리 기 관	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발 송

제 출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423호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22. 4. 21.시행)에 따라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물품의 분실·훼손 시 조치 방법과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방법을 신설하고, 용어의 순화 및 문장을 간결·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 제2항 개정에 따른 물품 분실·훼손 시 조치 방법 추가 (안 제23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른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방법 신설 (안 제3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 정비 (안 제3조, 제4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3조)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0조, 제92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272, FAX 453-22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규칙(안): 별첨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22. 4. 21.시행)에 따라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물품의 분실·훼손 시 조치 방법과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방법을 신설하고, 용어의 순화 및 문장을 간결·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 제2항 개정에 따른 물품 분실·훼손 시 조치방법 추가 (안 제23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른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방법 신설 (안 제3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 정비 (안 제3조, 제4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3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 제9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3조제1항 중 “밖의 출납보관”을 “밖에 출납 및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물품관리사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을 “물품관리 등의”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물품관리사무”로 한다.

제14조제2호 본문 중 “액”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만, “사용직 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액과 노임”을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경우에는 원료가액에 임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부적당하다고”를 “적당하지 않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영 제78조제2항”을 “영 제78조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를 “(물품의 분실훼손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망실·훼손”을 “잃어버리거나 훼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망실·훼손하였”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제1호 중 “망실하였”을 “잃어버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없을 때에는”을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제3항 중 “이외의”를 “이외에”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없을 때에는”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33조 중 “없을 때에는”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35조를 제36조로 하고,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물품출납 이동부의 정리구분

구 분		구 분 내 역
구입	입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양수	수용	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차용	산입	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생산	생입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편입	생도	공유재산으로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부생	여	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양도	여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대여	여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공유재산편입	각	물품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매각	체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해체	기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폐기	실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분실	납	잃어버린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반납		사용 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관급	급	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자연감모	감모	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관리전환	전환	물품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분류전환	전환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사용전환	전환	동일 물품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원 상호간의 이동
무상증여	증여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기증	증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잡	건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이동의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u>밖의 출납 보관</u>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u>물품관리에 관한 사무</u>를 처리한다.(2006. 7.28.신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u>물품의 관리등에 관한</u> 사무를 처리한다.(2006. 7.28 개정)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생략)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소유 <u>물품관리에 관한 사무</u>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생략)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u>다만, 사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u>	<u>제1장 총칙</u>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 ----- ---- <u>밖에</u> <u>출납 및 보관</u> -----. ②----- ---<u>물품관리사무</u> -----. ③----- ----- -----<u>물품관리 등의</u> -----.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물품관리사무</u>----- -----. 제14조(물품의 가격) ----- -----. 1. (현행과 같음) 2. ----- <u>금</u> <u>액. 다만, 외부에 의뢰 하여 제작</u> <u>한 경우에는 원료 가격에 임금</u>

가액과 노임

3. ~ 7. (생략)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른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
 는 경우

② · ③ (생략)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 제2항에
 따라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
 평가액 으로 하여야 한다.

(2001. 1. 10개정, 2015. 7. 31.
 일부개정)

⑤ ~ ⑧ (생략)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을 가산한 금액

3. ~ 7. (현행과 같음)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 적당하지 않다고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영 제78조제4항----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6. 7.28 개정)

② (생략)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6. 7.28 개정)

④ (생략)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신설>

①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물품의 분실·훼손 보고)①

----- 잃어버리거나
훼손-----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

-----.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
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
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
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
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
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의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1. ----- 잃어버렸-----

-----.

2. -----

-----없으면-----
-----.

③ 제2항-----

-----.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외에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

-----없으면-----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생 략)

- - - - -
-----없으면-----

-----.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
연도 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현행 제35조와 같음)

[참고자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재물조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424호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일부개정('22. 4. 21.시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오류 기재된 부분을 바로 잡으며, 현행 법규 및 규칙에 맞도록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오류기재 내용 수정 (안 제6조, 별지 제11호 및 제14호 서식)
- 「남동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 (삭제 1989. 2. 13) 관련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전환합의서에 따른 물품의 인계인수 시 결재권한을 총괄재산관리관으로 조정 (안 제14조)

3. 관계법령

-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8월 17일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272, FAX 453-22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규칙(안): 별첨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22. 4. 21.시행)으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오류 기재된 부분을 바로 잡으며, 현행 법규 및 규칙에 맞도록 정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오류기재 내용 수정 (안 제6조, 별지 제11호 및 제14호 서식)
- 「남동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 (삭제 1989. 2. 13) 관련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전환 합의서에 따른 물품의 인계인수시 결재권한을 총괄재산관리관으로 조정 (안 제14조)

☐ 본 문 : “별첨”☐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18”을 “제18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갈음한다”를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구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1호 및 제1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물 품 (관리전환) 합 의 서
무상양여

①()을 하고자 하는 기관							
②지방자치 단 체 명		③ 소 관 기관명		④ 회계명			
⑤정부물품분류번호	⑥품명	⑦규격	⑧단위	⑨수량	⑩금액	⑪물품의상태	⑫비고
⑬ (관리전환 무상양여) 의 조건							
⑭ (관리전환 무상양여) 의 필요 로 하는 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인계자 : 남 동 구 청 장 (인) 물품관리관 직 ·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 성명 (인)							
⑮()을 받고자 하는 기관							
⑯지방자치 단 체 명		⑰ 소 관 기관명		⑱ 회계명			
⑲()받은 후		물품의 종류					
		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인수자 : 인 수 관 서 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 성명 (인)							

[별지 제14호서식]

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

카 드
등록번호

(갑지전면)

①정부물품 분류번호		②품명		③규격		④단위		⑤회계(계 정)분류		⑥정수		⑦내용 년수		⑧물 품 출납원⑨		⑨물 품 관리관⑩	
⑩ 년 월 일	⑪ 정리 구분	⑫ 단 가	⑬ 수입 (수량/ 금액)	⑭ 출급 (수량/ 금액)	⑮ 재고 (수량/ 금액)	⑯ 운용 (수량/ 금액)	⑰ 물 품 출납 원⑩	⑩ 년 월 일	⑪ 정리 구분	⑫ 단 가	⑬ 수입 (수량/ 금액)	⑭ 출급 (수량/ 금액)	⑮ 재고 (수량/ 금액)	⑯ 운용 (수량/ 금액)	⑰ 물 품 출납 원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illegible][illegible]

[illegible]

(을지전면)

[illegible]

[illegible][illegible]

25																	
26																	
27																	
28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 기재요령

- ①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 ②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 ③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 ④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 ⑤ 회 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 ⑥ 정 수 :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 ⑦ 내용년수 : 물품별 내용년수를 기입한다.
- ⑧ 물품출납원 : 카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 ⑨ 물품관리관 : 카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 ⑩ 년 월 일 : 생략
- ⑪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 ⑫ 단 가 : 생략
- ⑬ 수 입 : 생략
- ⑭ 출 금 : 생략
- ⑮ 재고(수량/금액) : 보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 ⑯ 운용(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 ⑰ 물품출납원 : 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카드는 바인더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재상자 서랍에 보관 관리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등록번호에 순서적

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제18조--		
에 따른 불용품 폐기 (해체) 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에 따른 불용품 폐기 (해체) 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 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물품관리 전환 합의서 (물품 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 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u>갈음한다</u> .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 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물품관리 전환 합의서 (물품 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 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u>갈음한다</u> .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 -----		-----
②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 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u>부구청장의 결재를 받아</u> 물품관리전환 합의서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 인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 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u>부구청장의 결재를 받아</u> 물품관리전환 합의서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 인수한다.	----- <u>재정경제국장</u> -----		-----
③ (생략)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남동구(이하“구”라 한다)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산관리업무 주관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19. 8. 2.)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1. 구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2. 소·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동장(다만, 지도·감독은 구 본청의 업무주관 부서장이 한다)
 3. 구 본청 및 소·동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5. 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업무주관 부서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 이외의 재산과 일반재산 및 구유재산관리 총괄사무 : 재산관리업무 총괄 전담부서장 (개정 2019. 8. 2.)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1., 2019. 8. 2.)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2-76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직권말소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 권 말 소 일 자 : 2022. 07. 25.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2. 07. 27. ~ 2022. 08. 10.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직권말소일)
일반음식점	2020-0202377	마녀의식탁	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एको중양로156번길 5-28, 2층 (논현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2-04-13	2022-07-25
휴게음식점	2020-0202135	클로버PC방	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563, 동아베스트프라자 601호 일부호 (논현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1-05-26	2022-07-25

6. 고 지 사 항

- 본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3

2022년 7월 27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7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231 (간석동) 외 5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37번길 20 (간석동)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6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37번길 20 (간석동)	2022.7.22.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359번길 29 (간석동)	2022.7.22.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모텔갤러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19-3 (논현동)	2022.7.22.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19 (논현동)	2022.7.22.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231 (간석동)	2009.7.6	간석동을 지나는 도로로 돌산이 있었다는 유래에서 반영	2022.7.2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산로 231 기초구간에위치하여231을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87-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52번길 41 (간석동)	2009.11.16	석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5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2.7.2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정로552번길 41 기초구간에위치하여41을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6-8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31번길 35-1 (간석동)	2009.11.16	벽돌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2.7.2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벽돌말로31번길 35-1 기초구간에위치하여35-1을건물번호로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5-7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19번길 17 (간석동)	2009.11.16	벽돌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2.7.2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벽돌말로19번길 17 기초구간에위치하여17을건물번호로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41-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265번길 6 (구월동)	2009.11.16	구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2.7.2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로265번길 6 기초구간에위치하여6을건물번호로부여	

제1694호

남동구 구보

2022. 7 28. 금요일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5-17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19번길 7 (간석동)	2009. 11. 16	벽돌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2. 7. 2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벽돌말로19번길 7 기초구간에위치하여7을건물번호로부여	
---	-------------------------	-------------------------------	--------------	--	-------------	--	--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72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수산3지구) 지형도면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에 토지이용 규제 내용(용도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5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 업 명 : 「수산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319-4번지 일원
- 사 업 량 : 240필지, 98,114.4㎡

2. 사업시행자 : 남동구청장

3. 토지이용규제내용(지역·지구 등)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사 항
용도지역	「수산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조사·등록한 지적도에 부합되도록 선형변경
교통시설 (도로, 주차장 등)	「수산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조사·등록한 지적도에 부합되도록 선형변경

4. 지형도면 : 따로 붙임(게재 생략)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032-453-61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수산3지구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지형도면 총괄도 [변경 전]



범례

	개발제한구역		보전·준보전산지
	교통시설_도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교통_부설주차장		1종일반주거지역
	연속지적도		자연녹지지역

지정권자 : 남동구청장

지정일자 : 2022년 7월 25일

고시년도 : 2022년

고시번호 : 제 2022- 호

작성자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작성년월일 : 2022년 7월 25일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남동구청장

축척 : NONSCALE



수산3지구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지형도면 총괄도 [변경 후]



범례

	개발제한구역		보전·준보전산지
	교통시설_도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교통_부설주차장		1종일반주거지역
	연속지적도		자연녹지지역

지정권자: 남동구청장

지정일자: 2022년 7월 25일

고시년도: 2022년

고시번호: 제 2022- 호

작성자: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작성년월일: 2022년 7월 25일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남동구청장

축척: NONSCALE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7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1-10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1-10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건설과 ☎032-453-2722, 도시재생과 ☎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년 7월 28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 당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72-25번지 일원
-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79-2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고잔동 소로1-10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변경)

- 기정: L=380.0m, B=10.0m, A=3,549.0㎡
- 변경: L=380.0m, B=10.0m, A=3,812.8㎡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남동구청장(건설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2020.06.18. ~ 2025.03.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변경)

○ 따로 붙임

용 지 조 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소유자		관계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고잔동	350-30	장	2	2	0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2	고잔동	350-34	도	1	1	0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3	고잔동	350-28	답	1	1	0	남동구	-				
4	고잔동	586-33	도	10	10	0	국(건설부)	-				
5	고잔동	374-2	답	460	460	0	고** 외 2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근저당권	
6	고잔동	586-67	도	1,171	62	1,109	국(건설부)	-				
	고잔동	586-74	도	61	61	0	국(건설부)	-				(분할) 지번변경
7	고잔동	350-18	도	5	5	0	윤**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				신규
8	고잔동	373-3	답	186	166	20	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				
	고잔동	373-3	답	172	172	0						(분할) 면적변경
9	고잔동	372-39	답	127	127	0	오**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10	고잔동	372-41	전	58	58	0	전**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				
11	고잔동	372-32	전	157	157	0	김** 외 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12	고잔동	375-2	답	288	288	0	오**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13	고잔동	372-38	답	16	16	0	오**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14	고잔동	379-30	전	43	43	0	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	인**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	근저당권 지상권	
15	고잔동	372-68	답	8	8	0	남동구	-				신규
16	고잔동	379-38	전	102	102	0	남동구	-				신규
17	고잔동	372-77	전	23	23	0	남동구	-				신규

18	고잔동	372-76	전	11	11	0	남동구	-				신규
19	고잔동	379-37	전	103	103	0	남동구	-				신규
20	고잔동	379-29	전	41	41	0	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	인**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	근저당권 지상권	
21	고잔동	376-2	전	375	375	0	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 **				
22	고잔동	372-49	전	98	98	0	강** 외 3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	인**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	근저당권 지상권	
23	고잔동	372-64	전	11	11	0	여** 외 4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	서**	서울특별시 강서 구 양천로 ***	근저당권	
24	고잔동	377-2	전	682	639	43	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 **	죽**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중앙 로 ***	근저당권 지상권	
	고잔동	377-2	전	625	625	625	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 **	죽**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중앙 로 ***	근저당권 지상권	(분할) 면적변경
25	고잔동	409-8	잡	1,103	8	1,095	김** 외 1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	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	근저당권	
26	고잔동	409-34	답	67	0	67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	농**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	근저당권	
27	고잔동	409-40	답	165	165	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	농**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	근저당권	
28	고잔동	409-41	답	5	0	5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	농**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	근저당권	
29	고잔동	409-31	도	11	11	0	주**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 ***	중**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근저당권	
30	고잔동	408	잡	954	0	954	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 ***	권**	서울특별시 강남 구 대치동 ***		
31	고잔동	408-4	잡	639	639	0	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 ***				
32	고잔동	379-6	도	4,002	156	3,846	남동구	-				
	고잔동	379-36	도	163	163	0	남동구	-				(분할) 지면변경
33	고잔동	374	장	1,407	15	1,392	고** 외 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	남**	인천광역시 남동 구 만수동 ***	근저당권	
	고잔동	374-9	장	3	3	0	고** 외 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	남**	인천광역시 남동 구 만수동 ***	근저당권	(분할) 지면변경
34	고잔동	379-22	잡	122	7	115	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	인**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	근저당권 지상권	
	고잔동	379-22	잡	72	7	65	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	인**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	근저당권 지상권	(분할) 면적변경

제1694호

남동구 구보

2022. 7 28. 금요일

35	고잔동	372-16	장	1,936	2	1,934	김** 외 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				
	고잔동	372-16	장	1,933	2	1,931.0	김** 외 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				(분할) 면적변경
36	논현동	738-8	공	247,750	2	247,748	남동구	-				
37	고잔동	379-2	잡	778	0	778	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	중**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근저당권	
38	고잔동	379-34	잡	2	2	0	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	중**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근저당권	
39	고잔동	372-72	장	3	3	0	김** 외 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				신규
40	고잔동	372-74	장	3	3	0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 **				신규
41	논현동	787	도	61,216.2	16.8	61,199.4	인천 광역시	-				신규
기 정		합 계		262,668	3,549	259,119						
변 경		합 계		67,008.2	3,812.8	63,195.4						

지 장 물 건 조 서(당초)

일련 번호	동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수 량 (개소)	소유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고잔	374-2	EGI웬스	출입문	웬스	584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계근대	철재			1			
			기타	집계	배전반		2			
2	고잔	372-32	철망+강관	출입문	웬스	119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화단	라일락			3			
				백일홍			3			
				기타						
			컨테이너	휴게소			1			
				창고			1			
3	고잔	372-16	PE제품	저장시설	Φ150 0		8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	
					Φ800		1			

제1694호

남동구 구보

2022. 7 28. 금요일

			모터기				1			
			기계장치	냉각수			1			
			저장소	LPG	바닥기 초	1	1			
4	고잔	376-2	철재	출입문		14		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	
5	고잔	376-2	철재	웬스		127		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	
6	고잔	377-2	메쉬웬스	출입문		18		오**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	
			컨테이너	휴게소			1			
			컨테이너	창고			1			
7	고잔	409-34	천막+강관	창고		168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컨테이너	사무실			1			
			컨테이너	창고			2			
8	고잔	408	철재	웬스	출입문	514		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	
			천막+강관	창고		135				
			컨테이너	사무실			1			
			컨테이너	창고			1			
소 계						1,679	30			

지 장 물 건 조 서(변경)

일련 번호	동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수 량	편입수량	소유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고잔	374-2	출입문	함석		12.5m	12.5m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담장	함석		70.0m	54.6m			
			칸막이	함석		30.6m	30.6m			
			계근대	계근대		20.2 m²	20.2m²			
			집계	강재		1개소	1개소			
			배전반			1개소	1개소			

2	고잔	372-32	철망+강관	출입문	웬스	11.5m	11.5m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철망+강관	담장		21.7m	21.7m			
			컨테이너	창고, 휴게소		30.0 m²	30.0m²			
				수목		6주	6주			
3	고잔	375-2	저장통	FRP		9개소	9개소	오**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압출기	모터기		1개소	1개소			
			냉각시설	기계시설		1.6m²	1.6m²			
			LPG저장소	콘크리트		1.3m²	1.3m²			
4	고잔	376-2	파지압축기	기계장치		1식	1식	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	
			담장	함석		27.2m	6.2m			
			담장	철판		34.6m	13.8m			
5	고잔	377-2	담장	철판		17.7m	3.0m	정**	010-****	
			담장	철판		26.4m	9.8m			
6	고잔	377-2	창고	컨테이너		18.0 m²	18.0m²	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	
			담장	함석		41.8m	18.4m			
			담장	샌드위치 패널		4.8m	1.7m			
			출입문	메쉬웬스		1.7m	1.7m			
			담장	메쉬웬스		11.8m	0			
			사무실, 창고	컨테이너		36.0m	0			

제1694호

남동구 구보

2022. 7 28. 금요일

7	고잔	409-40 (409-7)	창고	강관,천 막	117.4 m ²	45.9m ²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창고	컨테이너	15.0 m ²	15.0m ²			
8	고잔	408-4 (408)	창고	강관,천 막	195.1 m ²	68.1m ²	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	
			사무실, 창고	컨테이너	54.0 m ²	54.0m ²			
			옹벽	콘크리트	22.5m	3.8m			
			담장	강관,함 석,방진 막	133.0 m	41.0m			
			출입문	각파이프 , 목재	6.7m	6.7m			

한 전 주 조 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 치(STA)	방 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 고
1	남동구 고잔동	374-2	2,008	좌측	8716X 981	한국전력	소로-10호선
2	"	586-2	3,002	우측	8716X 995	한국전력	"
3	"	372-39	3,018	"	8716X 993	한국전력	"
4	"	372-39	4,006	"	8716X 994	한국전력	"
5	"	409-34	14,013	"	8816C 032	한국전력	"

체 신 주 조 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 치(STA)	방 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 고
1	남동구 고잔동	374-5	NO.3+002.00	우측		한국통신	소로1-10호선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7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62호선, 소로2-2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62호선, 소로2-2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건설과 ☎032-453-2722, 도시재생과 ☎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년 7월 28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5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능골로 2-362호선 도로개설공사 외 1개소

3. 사업규모

- 소로2-362호선: L=320m, B=8m, A=3,168㎡
- 소로2-2호선: L=55m, B=8m, A=697㎡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건설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24.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따로 붙임

용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소로 2-362	소로 2-2	성명	주소	
1	수산동	501	전	959	104	-	송*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2	수산동	502	전	1,279	426	-	천*현	서울 양천구 신정동 ***	
3	수산동	597-110	도	959	536	-	국	건설부	
4	수산동	499-3	전	1,920	134	-	최*창	서울 강남구 광평로 10길 ***	
5	수산동	506	전	1,137	238	-	최*식	인천 남구 인하로 430번길 ***	
6	수산동	507	전	1,256	45	-	신*일	인천 남동구 만수동 ***	
7	수산동	499-1	전	1,921	470	-	최*관	인천 남동구 능골로 ***	
8	수산동	498	전	583	77	-	송*노	인천 남동구 능골로 ***	
9	수산동	354-5	전	992	31	-	정*량	남구 주안동 ***	
10	수산동	354-4	전	1,818	40	-	김*은	인천 남동구 능골로 ***	
11	수산동	600	도	1,368	210	43	국	건설부	
12	수산동	598-5	구	2,553	654	32	국	농림축산식품부	
13	수산동	354-9	답	1,897	155	170	천*분	서울 동작구 사당로 ***	
14	수산동	492-2	전	1,076	48	-	최*미외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	
15	수산동	354-7	잡	400	-	232	이*승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662번길 ***	
16	수산동	354-15	답	73	-	73	김*창	인천 남구 학익동 ***	
17	수산동	354-10	전	1,248	-	41	김*창	인천 남구 학익동 ***	
18	수산동	356	답	99	-	5	**종친회	487	
19	수산동	357	답	142	-	89	**종친회	487	

제1694호

남동구 구보

2022. 7 28. 금요일

20	수산동	354-1	대	330	-	5	김*창외1	인천 남구 학익동 ***	
21	수산동	345-9	도	2,220	-	7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				24,230	3,168	697			

지장물 조서

	소재지	지번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산출근거	소 유 자		비 고
							성명	주소	
1	수산동	499-1	비닐하우스	5.0 x 17.0	1	84㎡	최*관	인천 남동구 능골로 *** (수산동)	
2	수산동	499-1	비닐하우스	5.7 x 10.5	1	60㎡	최*관	인천 남동구 능골로 *** (수산동)	
3	수산동	499-1	비닐하우스	6.0 x 6.3	1	38㎡	최*관	인천 남동구 능골로 *** (수산동)	

한전주 조서

	소재지	지번	도로	위치 (STA)	방향	번호	비고
1	수산동	502	소로2-362	0+003.85	우	도림지 57,213	한전
2	수산동	501	소로2-362	0+008.21	좌	도림지 57,L13,A1	한전
3	수산동	502	소로2-362	0+035.40	좌	도림지 57,L13,H1	한전
4	수산동	597-110	소로2-362	0+056.74	우	도림지 57,L12	한전
5	수산동	499-3	소로2-362	0+100.00	좌	도림지 57,L11	한전
6	수산동	499-1	소로2-362	0+116.70	우	도림지 57,L10	한전
7	수산동	597-110	소로2-362	0+175.89	우	도림지 57,L9	한전
8	수산동	354-5	소로2-362	0+187.00	좌	도림지 57,L9,A1	한전
9	수산동	354-9	소로2-362	0+222.00	좌	도림지 57,L8	한전

제1694호

남동구 구보

2022. 7 28. 금요일

10	수산동	600	소로2-362	0+264.90	좌	도림지 57,L7	한전
11	수산동	354-7	소로2-2	0+033.00	우	도림지 57,L7,R1	한전

통신주 조서

	소재지	지번	도로	위치 (STA)	방향	내용	비고
1	수산동	502	소로2-362	0+003.65	우	-	KT
2	수산동	597-110	소로2-362	0+055.39	우	-	KT
3	수산동	354-9	소로2-362	0+220.80	좌	-	KT